

INVENTION & PATENT

2012 August

08

2012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Focus]

스포츠는 과학이다
올림픽에 숨어 있는 특허기술들

발명 특허



INVENTION & PATENT _ Vol. 433



Contents



2012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Column

- 20 스포츠는 과학이다 (올림픽에 숨어 있는 특허기술들)
- 24 '올림픽(Olympic)'의 '림픽(lympic)'도, '올림피아드'도 쓰지 마라??
- 28 특허가 장애물?
- 30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Report

- 32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 40 최근 공조 및 냉동 기계분야 특허기술 동향
- 45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 46 독일의 특허소송
- 54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및 중국 우선심사제도
- 62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 66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Information



- 68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 73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 74 KIPO NEWS 특허청 소식
- 79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 80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82 발명만화 몰래발명이야기 (페트병)
- 84 건강하게 삼시다 여름철 불청객, 냉방병주의



대학창의발명대회

상상을 현실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추진목적

대학 사회에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양성, 우수 졸업 작품 등 대학(원)생 연구성과의 권리화·사업화 지원

참가자격

국내 대학(교)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구분	참가방법	지도교수	기타
발명특허부문	팀(2~3명)또는 개인	필수	※ Post Doc 참가 가능
발명공모부문			

경진부문

발명특허부문 (신청기간 : 8.2~9.13, 발명신고서 제출)

- 교내활동(졸업작품·논문, 개인발명 등)을 통하여 완성된 발명을 특허출원서 형식으로 제출한 후 우수한 발명을 선정하는 부문
- * 심사 후 선정된 40개 팀 시작품 제작비(80 만원 한도) 지원

발명공모부문 (신청기간 : 8.2~9.13, 과제해결서 제출)

- 공모기업이 출제하는 발명과제를 해결하는 부문
 - 중앙방수기업 : 기존 방수공사 관련 특허의 기능개선 또는 신제품, 신공법 개발 아이디어
 - 한경희 생활과학 : 대기업의 백색가전을 제외한 생활가전과 이미용가전의 새로운 기능 또는 신제품 아이디어
 - LS산전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량시스템
- 경진부문 모두 다른 기업체 지원에 의한 성과물은 제외
부문별 복수신청 가능하며, 1인당 신청건수 제한 없음

발명연구부문 : 아이디어를 발명제안 형식으로 제출한 후 교육과 연구를 거쳐 발명으로 완성하고 발명내용을 특허출원서 형식의 서면과 시작품으로 작성·제출('12. 4월~7월, 우수발명아이디어를 제출한 60팀 선정하여 발명연구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완성하고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 진행 중), 발명연구부문 2차 통과작은 신청제외

시상내역(총상금 1억3천5백만원)

- ▶ 학생부문 : 국무총리상 등 1억 5백만원
- ▶ 지도교수부문 : 과총회장상 1천 6백만원
- ▶ 발명동아리부문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등 1천 4백만원

수상자특전

- ▶ 발명연구부문 1차 통과작 무료발명특허교육 2박 3일(7월초 완료)
- ▶ 우수상 이상 수상작 국내출원비 지원
- ▶ 대상수상발명 국제발명전시회 출품지원

대회홈페이지 : www.inventkorea.org

Facebook.com/
[inventkorea.org](http://www.inventkorea.org)

문의 :

02-3459-2950, 2794, 2798

idea

주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특허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MKE 지식경제부 KIM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서울대한전자공학회

KCS 대한화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과학기술자협회 KOVA (사)벤처기업협회

협찬 : HUROM SLOW JUICER 중앙방수기업주식회사 HAAN 환경화학과학 LS산전



twitter.com/inventkorea



발명의 즐거움이 한자리에! 2012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및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동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 행사인 「2012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허청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제25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는 김유진(부산상당초 5년) 학생이(발명품 : 보관 및 휴대가 간편한 학습용 가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에는 김채란(경기 운암고 3년) 학생이,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에는 문경진(인천과학고 1년) 학생이, 조선일보사장상에는 김준석(대전 충남중학교 2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전시장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70여 점의 다양한 발명품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개막행사에 이어, 시상식에서는 김호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학생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이 수상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수상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이 수상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호원 특허청장(중앙) 및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우),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좌) 등 주요 내빈들이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학생 참가자 대표 및 심사위원 대표가 김호원 특허청장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와 더불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본선대회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동시에 개최되어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또한,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발명·특허 특성 학교, YIP(Young Inventors Program, 청소년발명가 프로그램) 등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발명교육 정책에 대한 흥

보관도 별도 운영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학술대회 및 포럼이 함께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와 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가 동시에 개최된 만큼 청소년을 위한 발명행사 중 단연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호 원
특허청장

여러분의 잠재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수상하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님, 김광림 발명진흥회장님, 이종원 조선일보 편집부국장님, 김종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본부장님, 최은철 과천과학관장님, 한미영 여성발명협회장님, 표재호 특허정보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는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하고, 발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발명전시회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우수한 발명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미래의 지식재산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올해에는 8천건이 넘는 발명품들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170여건을 오늘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조상들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용 천문대인 첨성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심경,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 등 우리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독창적인 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발명에 관해 특별한 DNA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상당초등학교 김유진 학생의 발명품인 “보관과 휴대가 간편한 학습용 가위” 등 학생들의 발명품을 살펴보면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살아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수상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의 이런 발명 DNA를 가장 많이 물려받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창의성 있는 인재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학생들이 남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며 노력한다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중추적인 인재로 자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잠재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서도 청소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이를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청도 여러분이 마음껏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전시회에서 수상하신 학생 및 선생님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학생발명전시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발명진흥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25th Korea Student Invention Exhibition

김 광 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 김호원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수상학생과 교사,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성취하게 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발명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장으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밝힐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발명으로 꿈을 실현시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1996년 초등학교 6학년때 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관우씨는 소셜커머스 벤처기업인 데일리픽을 창업하여 8개월만에 업계 2위로 성장시킨 후, 국내 1위업체인 티켓몬스터에 90억 원에 매각하였는데요, 그의 노트에는 사업아이디어만 3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때 발명을 접하기 시작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학생발명전시회에서 금상 수상작품으로 '주식회사 아미'를 창업한 성균관대 김주안 학생

은 교육환경이 어려운 세계 여러지역에 학교를 많이 설립하는게 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상학생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재산과 발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계 제일의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우리나라를 빛낼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미래의 주역들을 이끌어 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2012. 8. 10. (토)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Interview **대통령상**

필통에 쏙~ ‘보관과 휴대가 편한 가위’ 발명



김 유 진
부산 상당초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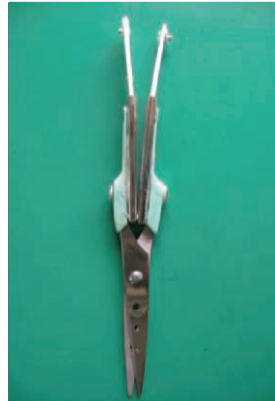
학 생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위를 휴대할 때 손잡이 부분이 필통보다 커 가방 속 에 넣고 다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한 ‘보관 및 휴대가 간편한 학습용 가위’로 김유진(부산 상당초 5학년) 학생이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유진 학생은 “가위의 손잡이 부분이 부피가 커서 가방에 그냥 넣고 다녔다”면서 “가위를 찾을 때 가방을 다 뒤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칠 우려가 있어 불편했다”며 발명 동기를 설명했다.

이 발명품은 가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손잡이 바깥 부분을 분리하여 일자형 손잡이로 만든 다음 직선부의 내부로 밀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필통이나 작은 공간에도 휴대·보관이 용이해 학습용뿐만 아니라 부엌 등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김유진 학생은 “오빠가 발명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을 보며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오빠와 함께 창의력을 리피어드 대회에 나가는 등의 활동을 통해 발명에 많은 흥미를 갖게 됐다”면서 “요즘은 주변 물건을 볼 때 불편한 점을 찾거나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원래 부끄럼이 많은 내성적인 학생이었는데 발명을 하며 자신감을 갖게 됐고, 발표와 토론에도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과학적 원리를 많이 배워 세상에 없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터치 아파트 현관문 고정장치’ 발명



김채란
경기 운암고 3학년

“**현** 관문을 고정시킬 때 하단에 도어스토퍼가 말발굽 모양으로 부착되어 있어, 고정할 때 마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에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제25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원터치 아파트 현관문 고정장치’ 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채란(경기·운암고 3년)학생의 소감이다.

김채란 학생은 “보통 발로 말발굽을 세워 현관문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또 다리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고정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현관문 손잡이 옆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터치 아파트현관문 고정장치’ 는 전류가 발생하면 자기장이 생겨 고정을 시키는 솔레노이드 원리를 이용했으며, 현관문 손잡이 옆 버튼을 누르면 현관문이 고정된 상단에 쇠막대기와 같은 핀이 올라와 스톱구멍에 고정되게 된다.

김채란 학생은 “이 발명품은 고정장치 외에도 문이 닫힌 상태에서 이용하면 잠금장치로도 이용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도어스토퍼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일 뿐 아니라, 현관문에 달기만 하면 되므로 경제적인 것”이라고 발명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명이란 나도 사용하기 좋고 남도 사용하기 좋은 것”이라면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발명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Interview **WIPO 사무총장상**

걸레를 교체하기 쉬운 분리형 대걸레 발명



문 경 진
인천과학고 1학년

“여름철이 되면 학교 내 청소도구함에서 마대걸레의 썩는 냄새가 나곤했다. 그걸다고 청소 도구함이 아닌 마포 걸이에 걸어두면 미관상 좋지 않아 해결책을 고민하게 됐다.”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한 문경진(인천과학고 1) 학생이 발명하게 된 동기다.

문경진 학생이 발명한 '걸레를 교체하기 쉬운 분리형 대걸레'는 학생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학교 청소를 하다보면 대걸레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용 후 보관이 불편하고 용수철을 사용해서 잠그고 푸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보니 걸레를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새로운 대걸레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발명품은 진공청소기처럼 봉 두개가 결합돼 위 아래로 움직이는 형태로, 세탁 후 마대걸레를 봉 중앙으로 올려 건조시키기 좋을 뿐 아니라 밀폐용기에 착안해 걸레를 고정시키기 편하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문경진 학생은 “발명을 하다보니 주변을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게 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각이 다양해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좀 더 나은 현재를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꿈을 꾸는 학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물을 절약해주는 ‘자동절수 소변기’ 발명



김 준 석
대전 충남중 2학년

“ **화** 장실에서 소변을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소변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준석(대전 충남중 2학년) 학생은 화장실 소변기 센서가 소변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을 감지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동절수 소변기’를 발명해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조선일보 사장상을 수상했다.

‘자동절수 소변기’는 부착된 센서가 사람이 아닌 소변을 감지하도록 고안되어 센서의 오작동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김준석 학생은 “소변을 감지해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센서가 소변에 의해 잘 부식될 수 있지만 비교적 쉽게 교체할 수 있다”며 발명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발명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중학교에 들어와 발명 교육을 받으며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발명을 배우면서 생각할 때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단지 불편하다고 단정지어 넘어가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편한 것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을 계속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자 명단

■ 학생부문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대통령상	부산상당초	5	김유진	보관 및 휴대가 간편한 학습용 가위	대통령
국무총리상	경기운암고	3	김채란	원터치 아파트현관문 고정장치	국무총리
WIPO사무총장상	인천과학고	1	문경진	걸레를 교체하기 쉬운 분리형 대걸레	WIPO사무총장
조선일보사장상	대전충남중	2	김준석	자동절수 소변기	조선일보사장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금상	포항영신고등학교	3	류경찬	문높이 조절 문	교과부장관
	충북과학고등학교	1	신영하	충격흡수 안전벨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	조준상	담금과일 누르개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3	박미선	여러 가지 힘에 의한 지구의 대류 학습 시스템	
	명덕여자고등학교	2	김형민	부착식 수생식물 광합성 스탠드	
	영동일고등학교	3	황호현	자성을이용한 발전장치	
	삼일공업고등학교	1	김현주	문 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대차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2	손지혜	손잡이폰케이스	지경부장관
	부산외국인학교	10	박경민	자전거 페달 위치 결정 기기	
	대구동중학교	1	이우제	전기절약 15단계 전원스위치	
	제주제일중학교	2	김덕건	이륜차 주차 검용 경계블록	
	효양중학교	3	윤창욱	다량의 튀김요리를 쉽게 하는 요리도구	
	대전외삼중학교	2	황지현	앞머리 커트를 위한 보자기 고정장치	
	정천초등학교	5	김도현	점자학습기	
서울삼육초등학교	5	연주하	'과학상자 골무드라이버'	교과부장관	
이담초등학교	3	이승찬	Care bell		
명덕여자고등학교	1	정미준	자동식 콘센트 먼지 쌓임 방지커버		
포항영신고등학교	3	손동완	안전한 못		
낙생고등학교	2	박현지	클립처럼 씌우는 피겨스케이트 옛지케이스		
효양고등학교	1	서수빈	간편하고 순간적으로 산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포항영신고등학교	3	모성현	손쉽게 쓰레기봉투를 바꿀 수 있는 쓰레기통		
보성고등학교	1	고일상	자전거 탈체인 프로텍터		
포항영신고등학교	3	김경석	안전하고 편리한 문 지지대(주로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함)		
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1	권혁준	다치지마! 노리개젓꼭지		
보성고등학교	3	박진일	안전한 압정 보호 커버		
유성여자고등학교	3	박민경	감압용 음료용기 마개		
이매고등학교	3	최용석	'휴대용 책꽂이 기능을 갖는 평자'		지경부장관
명덕여자고등학교	1	채민주	머리끈 빗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은상	사천고등학교	2	최덕희	젖은손으로 뽑아쓰는 티슈	지경부장관
	보성고등학교	1	윤성준	소방용품보관함의 잠금장치	
	보성고등학교	1	송한결	플립방지신발끈	
	경안고등학교	1	윤현희	비가와도 뽕송뽕송한 의자	
	낙생고등학교	3	조영서	재사용 냉각베개	
	전북과학고등학교	1	김가은	손으로 가방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닫아지는 도르래 원리 이용 자동지퍼기	
	성일고등학교	3	이태호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한 글자 테두리를 칠할수 있는 형광펜	
	남대전고등학교	2	변종원	간편한 자전거 스포츠 잠금장치	
	덕계고등학교	2	박진선	혀너 신발 신기 도구	특허청장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3	박기태	수영장 및 풀장에서 미끄럼 방지 밴드	
	경기과학고등학교	1	윤재준	미끄러져들어가는 콘센트	
	석천중학교	2	유영우	건전지가 필요없는 발광 안내봉	
	산곡여자중학교	1	정경빈	정량용기 부착된 알뜰 환경세제 용기	
	군위중학교	3	윤지영	편리한 책 뽑기	
	대구동중학교	1	이학운	똑똑한 usb	
	잠실중학교	2	황민영	편리한 봉지 내장형 밀가루체	
	영도중학교	1	방우현	탄성의 원리를 응용한 싸이폰마개 불량 누수 이중방지장치	
	명일중학교	2	정현주	가방이되는 미니옷장	
	경화여자중학교	3	김희경	업라이트 피아노 댐퍼페달의 높이조절	
	문창중학교	2	박유민	데굴데굴 굴러보자 김장용 절임 봉투(김장봉투)	
고창초등학교	5	노수민	폭풍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환풍구형 회전 신호등		
달안초등학교	3	김초현	쏟아지지 않는 안전 컵라면 용기		
반송초등학교	5	장예원	진동형 용기 세척기		
동북초등학교	5	최유빈	새로운 손가락통		
동북초등학교	3	황서운	화장실용 휴지 엘리베이터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4	최우진	한 손 장애인을 위한 한손으로 따는 병따개		
증안초등학교	6	강태윤	바나나 SOS 라이트		
서울잠일초등학교	5	배지윤	전자석 문고정기		
동상	시흥매화고등학교	1	박선영	실내 외 구분사용 가능한 바퀴	한국발명진흥회장
	청송여자고등학교	3	김청하	고품질 사과 생산 자동 반사필름	
	보성고등학교	1	김승주	책 넘김 방지 도구	
	마산구암고등학교	2	박민경	편리한 토스터기 청소도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	고명은	지퍼의 혁명	
	포항영신고등학교	3	이명욱	정수기 슬라이더	
	대전과학고등학교	3	민병헌	렌턴과 방독면 기능을 가진 소화기용 안전핀	
	포항영신고등학교	3	안재형	발을 필요없는 쓰레기통	
	포항영신고등학교	3	정현철	매직주걱	
	포항영신고등학교	2	김용현	안전을 위한 자이로스코프 시험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3	강희석	길이 조절이 가능한 원격 조작기구		

제2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 수상 내역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동상	충남과학고등학교	1	엄태일	관절 운동용 수동 페달이 장착된 휠체어	한국발명진흥회장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	김희경	편리한수정,스카치테이프	
	충원고등학교	2	진성현	빨 때 구멍이 넓어지는 콘센트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1	이서준	다방향 헤어 드라이어(음션)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	유미래	눈금 수정테이프	
	충남고등학교	2	신형식	배수를 빠르게하는 소용돌이 캡	
	낙생고등학교	1	김건호	장애인도 옆드려 공부할 수 있는 침대	
	한동글로벌학교	2	안성중	동물 안전 목줄	
	보성고등학교	2	정지우	자성을 이용한 움직이는 스텐드형 옷걸이	
	경남과학고등학교	1	정광범	좌변기의 좌대 온도 조절장치	
	포항영신고등학교	3	이도건	물절약욕조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2	김동엽	Two in One 다리미	
	명덕여자고등학교	1	정유미	글씨 가지런하게 쓰기	
	보성고등학교	1	박규열	일어나기가 힘든신 어르신들을위한 편의기구	
	인헌고등학교	3	윤혜영	풍력과 태양광전지를 이용한 길 안내 중앙 분리대	
	대전반석고등학교	3	강완구	자바라를 이용한 다용도 보조 책상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	강병국	집게 목발	
	보성고등학교	2	김주영	신개념 자외선 살균 장치	
	인헌고등학교	3	박보빈	(별도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친환경 전동손수레	대한상공회의소장
	포항고등학교	2	김영서	병상침대 독서대	
	보문고등학교	2	고석우	탄성을 이용한 종이 압축 세단기	
	하나고등학교	3	한원홍	노약자 또는 병사들을 위한 맥박센서 목걸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2	김길호	잠만경 원리를 이용한 페 CD 반사경(델리네이터)	
	보성고등학교	1	이해빈	랩 간편 제거 기구	
	낙생고등학교	1	김정현	끼고 빠기 편리한 압축형 옷걸이	
	대전대신고등학교	2	윤수진	어린이를위한화상방지자판기도어락	
	대전대신고등학교	1	김동균	충격완화휠체어	
	보성고등학교	1	김태영	탈부착 오리털 주머니를 가진 재킷과 기온별 오리털 주머니	
	성일고등학교	3	송수빈	손에 찢리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압정통	
	경남과학고등학교	3	최진호	길이 측정과 절단이 용이한 노끈 미터기	
보문고등학교	3	송규섭	불화수소를 이용한 잔기스 제거 반창고		
대전과학고등학교	3	김홍원	작고 휴대가 간편한 롤형 휴대용 필기 받침대		
낙생고등학교	2	이유정	편리한 이면지 보관함		
인천과학고등학교	1	김도운	Quick braking assistance device (급제동 도움 장치)		
영등포고등학교	1	신유철	심폐기능 향상 시키는 심폐보조기		
영등고등학교	3	이예준	탄산의 누출을 막아주는 이중 캡		
성남고등학교	3	신종민	음식물쓰레기 액체분리기		
대전대신고등학교	2	최승희	개봉 타이밍을 알려주는 캔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동상	경문고등학교	2	강현우	아프리카 물부족을 위한 휴대용 정수기	한국무역협회장
	인천과학고등학교	3	김준호	더블 클립을 응용한, 비닐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휴대용 캡	
	대전중앙고등학교	1	국승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위생 젓가락 통	
	포항장성고등학교	2	박한솔	무동력 분말 소화기 유동장치	
	서울세종고등학교	3	황현준	소화 급수관을 이용한 가슴 시스템	
	서울과학고등학교	1	유태호	에위스(EWIS: Electronic Wind Instrument Set	
	부산진여고	3	정혜원	벨트의 단부가 내부로 들어가는 버클	
	용문고등학교	2	배재호	mgsinθ for 노약자	
	대전외삼중학교	2	김민채	참 편한 찜질팩	
	남산중학교	2	김대한	점자주방용구	
	동신중학교	2	박라림	자가발전형 쓰레기통	중소기업중앙회장
	동신중학교	2	이화영	멜빵형 깁스	
	하안북중학교	1	김재홍	이동하기 편리한 전동휠체어	
	봉선중학교	2	박모세	절전형 방식 스탠드	
	한영중학교	2	신홍철	시각장애인을위한횡단보도	
	산곡여자중학교	3	김찬영	초보자를 위한 렌즈 받침대	
	신기중학교	3	이원재	시각장애인용 위치 감지 그릇과 숟가락	
	연수중학교	3	우성욱	안짱다리,발짱다리,팔자걸음 교정 보조 장치	
	산곡남중학교	2	노현수	초음파센서와 바코드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안경	
	연수중학교	2	김도희	차량 횡단보도 보조 신호기	
	한밭여자중학교	3	박수진	장애인용 숟가락 장치	대한변리사회장
	대전탄방중학교	2	손제욱	소화기 위치 알림 장치 및 방법	
	신송중학교	3	이지훈	당기면 닫혀지는 커튼	
	오성중학교	2	황동규	이동식병상세트	
	대전여자중학교	2	채다영	장애인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건널목	
	신송중학교	2	허승진	One/Touch형 절수형 수도꼭지	
	강북중학교	3	문예은	2단 볼펜	
	대전문지중학교	1	이광원	가정용 및 휴대용 소용량 우산 건조기	
	삼각산중학교	1	임건태	멀티 컵홀더	
	대전지족중학교	2	이정연	부착면이 일부인 테이프 제작 장치	
성남장안초등학교	5	황영인	책고정구(BOOKFIXITY)	한국여성 발명협회장	
영동초등학교	3	류승훈	사용이 편리한 물통		
사창초등학교	5	양지원	신발집게와 구두주걱		
유영초등학교	3	설혜리	핀셋 겸 집게		
대구신천초등학교	2	김경원	반달형 미니 할로겐 히터		
영북초등학교	5	김성빈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돌아가는 칠판 지우개		
인천만석초등학교	6	이건영	구 모양의 얼레		
장기초등학교	6	최은강	몽당연필도 찾기 쉬운 연필꽂이		
경산중앙초등학교	5	송성윤	펼쳐지는 원기둥 감자 과자용기		
탄천초등학교	6	권재윤	끼워쓰는 펜 홀더		

상 격	학 교	학년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동상	반송초등학교	6	황승범	리틀 야구왕!	한국특허정보원장
	신양초등학교	3	정예원	동생과 놀 수 있는 펜토미노게임	
	태강삼육초등학교	6	신현덕	내몸에 맞는 키펴드	
	서울삼육초등학교	6	정다경	자동차 문 찍힘 방지 시스템	
	군산지곡초등학교	4	김성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밀폐되고 식탁에 나오면 잘 열리는 요술 뚜껑	
	불곡초등학교	6	김동우	뮌든 척척! 달력 박사	
	대구달성초등학교	5	김혜진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수평잡기 실험기구	
	동북초등학교	6	김서연	깎창까지 깨끗히	
	안동영호초등학교	6	조민주	신호등 경광봉	
	유성초등학교	6	박지윤	페트병으로 만든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키우는 멀티 어항	

■ 단체상

구 분	시상종류	출 품 명
학 교	특허청장상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대전 동신중학교
		서울 삼육초등학교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청		

제14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자

상 격	학 교	성 명	출 품 명	시상주체
금상	대전하기중학교	김기환	쉽게 빠는 나선형 홈 아이스 트레이	교과부장관
은상	광명광덕초등학교	이종환	식물과 함께 자라는 식물 지지대	지경부장관
	시흥매화고등학교	임종우	손목보호기능이 구비된 crutch grip	
동상	이리초등학교	박희철	나사탄창식 전동드라이버 모듈	특허청장
	대전지족중학교	김진숙	스마트 박스 테이프 커터	
	대기초등학교	강훈이	제 기능 못하는 CCTV 알람장치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정점숙	무인단속카메라 사각지대 단속장치	
특별상	능인중학교	정기화	무선통신을 이용한 이동형 호출장치	조선일보사장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이원계	적벽돌 줄눈 미장 기계	
장려상	신시도초등학교 아미도분교장	김보민	식물에 따라 알맞게 물주는 화분	한국발명진흥회장
	대월초등학교	박명희	한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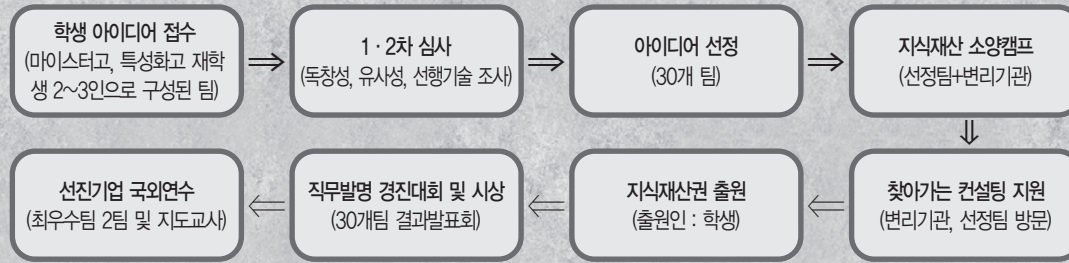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 사업

<제2기 IP-Meister Program 참가모집 안내>

■ IP-Meister Program 소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국내기업이 판매 중인 제품에 관련된 기술 개선, 용도변경, 디자인 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변리전문가·기술전문가 멘토와 함께 학생 아이디어가 제품화·사업화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추진절차



■ 주최·주관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 및 지원안내

- 공모과제 : 자유과제 및 현장연계과제 ※현장연계과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참가자격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3인 이내의 팀
※1인으로 구성된 팀은 신청 불가, 지도교원 1인 반드시 참여
- 신청방법 : 사업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선정규모 : 30개팀
- 신청기간 : 2012. 8. 20(월) ~ 9. 21(금), 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 특전

-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인증서(수료증) 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선정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국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한 영역 출원
- 예비기술자 직무발명 경진대회 참여
 - 직무발명경진대회 최우수팀 2팀 및 지도교사 상장(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선진기업 국외연수 실시
 - * 최우수팀 상격은 변경될 수 있음

■ IP-Meister Program 주요 일정(안)

구분	일정	세부내용
아이디어 접수	'12. 8. 20 ~ '12. 9. 21	▶ 팀 단위 신청(동일 학교 소속의 2~3명 이내) ▶ 우편, 이메일 접수
심사 및 선정	'12. 9. 27 ~ '12. 10. 19	▶ 1차 심사: 독창성, 상품성, 권리화 가능성 ▶ 2차 심사: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참고한 유사성 심사
선정팀 소양캠프	'12. 10. 26 ~ '12. 10. 28	▶ 직무발명제도 등 교육
지식재산 컨설팅	'12. 11월~'12월	▶ 2회의 아이디어 개선 컨설팅(2회, 학교방문) ▶ 온라인을 통한 아이디어 개선 컨설팅(수시)
아이디어 권리화	'12. 12월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완료
직무발명 경진대회	'13. 1월 중순	▶ 출원 아이디어에 대하여 외부전문위원 평가 ▶ 수료 및 최우수팀 선정
선진기업 국외연수	'13. 2월 중순	▶ 연계기술의 선진기업 국외연수 실시

* 상기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이은성 과장, 윤인걸 사원
- TEL : 02-3459-2753 / 2957 FAX : 02-3459-2758
- E-Mail : ipmp@kipa.org, les@kipa.org, smart1369@kipa.org
- 신청접수 : 제안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창의인재육성팀 마이스터고 담당자 앞
 - E-Mail : ipmp@kipa.org

미국현지전문가초청강의!! 미국특허실무완전정복!! 교육비 지원 확대!

2012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미국 특허분쟁 협상 및 소송외 해결방안

Negotiation and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해외출원 및 분쟁 등이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인력을 대상으로 국제특허업무 능력 및 분쟁역량 향상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프로그램 개요

- 교육기간 : 8월 24일(금)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8층 교육장
- 교육대상 : 기업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미국특허 관련업무 종사자, 미국 특허출원 및 소송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 교육인원 : 30명 내외 (선착순 마감) •교육비 : 11만원 (중식제공)
- 교육비 지원 및 할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지원 (*20,000원만 선납부)
 - 조기신청자(8월 17일까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교육비 50% 할인 (*40,000원만 선납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할인 적용 불가

■ 프로그램 특징

- 미국 특허분쟁 협상 또는 대체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론뿐 아니라 사례 및 실무중심으로 강의운영
-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통한 해외 실무경험 공유
- 특허출원 및 소송분야에서 미국 최고 수준의 특허전문 Finnegan & Henderson의 파트너 변호사 초청강의
- 강의는 우리말과 영어를 병행하고, 영어 강의시 한국어로 Q&A 및 요점정리를 통한 내용 이해 도모

■ 프로그램 일정

일 정	시 간	교 육 내 용
8/24(금)	09:10~09:30	Reception and Orientation
	09:30~09:40	Overview of the Program
	09:40~10:40	Licensing your IP
	10:40~11:00	Q/A-Break
	11:00~12:00	Scope of License
	12:00~13:20	Lunch
	13:20~14:30	Negotiation
	14:30~14:50	Q/A-Break
	14:50~16:00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6:00~16:30	Q/A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 강사

Charles H. Suh



- Finnegan & Henderson 파트너 변호사
- 주요약력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Virginia Trial Lawyers Association
- 최종학력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D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2년 7월 30일(월) ~ 8월 22일(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pid@kipa.org) 또는 FAX(02-3459-2859) 접수
 신청 후 확인 전화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팀 (Tel. 02-3459-2815, 280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 참조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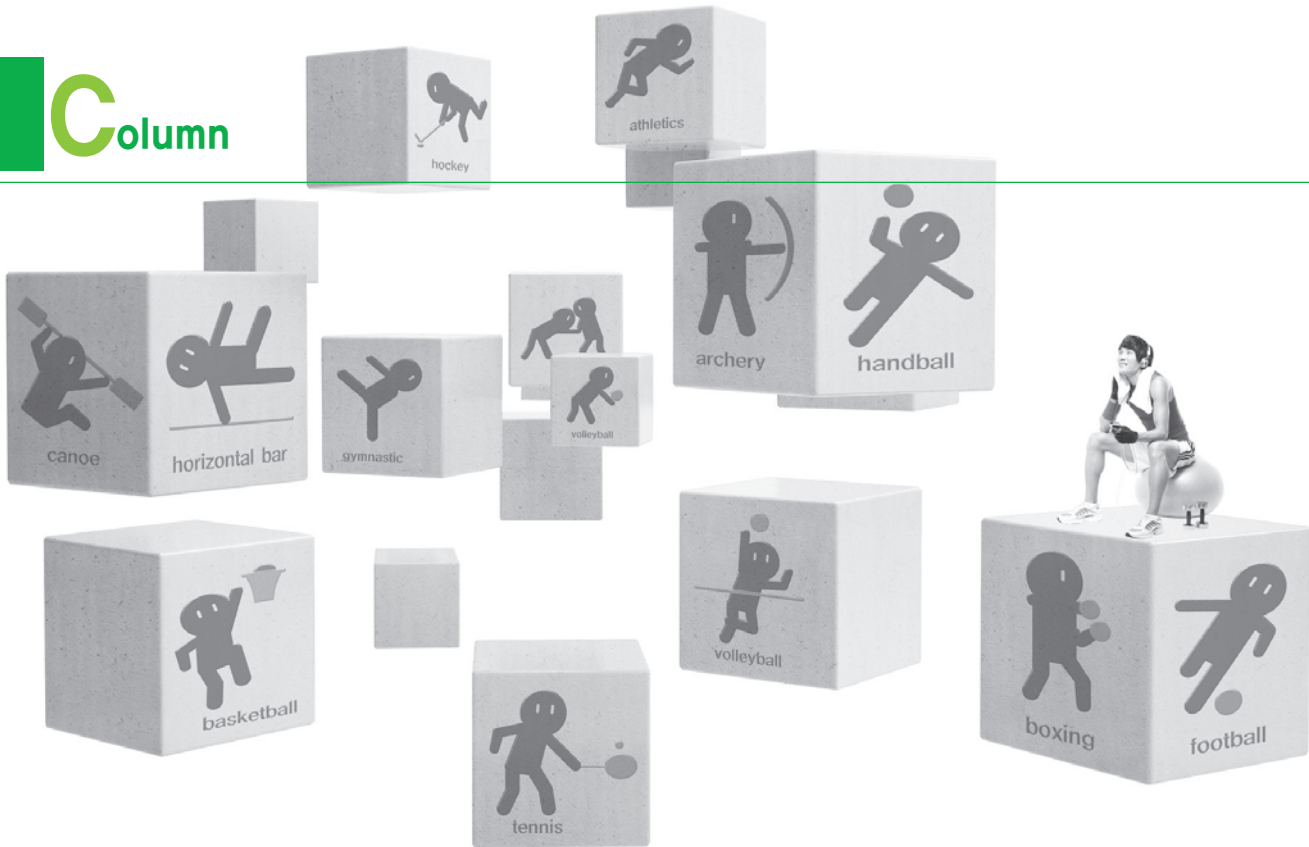
스포츠는 과학이다 (올림픽에 숨어 있는 특허기술들)

'올림픽(Olympic)' 의 '림픽(lympic)' 도, '올림피아드' 도 쓰지 마라??

특허가 장애물?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Column



스포츠는 과학이다

올림픽에 숨어 있는 특허기술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4년동안 땀과 눈물로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들의 모습들은 모두 감동 그 자체이다.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고를 향한 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수들은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고된 훈련을 소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들만이 아니다. 올림픽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며 겨루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선수들이 입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운동복과 운동장비에 숨어 있는 첨단 과학이다. 첨단 기술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류나 장비들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훈련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수영복 기술- 기록을 단축시킨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그 해 열린 각종 국제 수영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이 무려 108개나 쏟아져 나왔다.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43개의 세계신기록이

작성되었다. 이렇게 세계신기록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은 전신수영복이 뒤에서 크게 한몫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신수영복은 과학기술도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수영종목에서 기록 단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의 주종목인 200m, 400m 자유형의 세계신기록도 독일의 파울비더만이 전신수영복을 입고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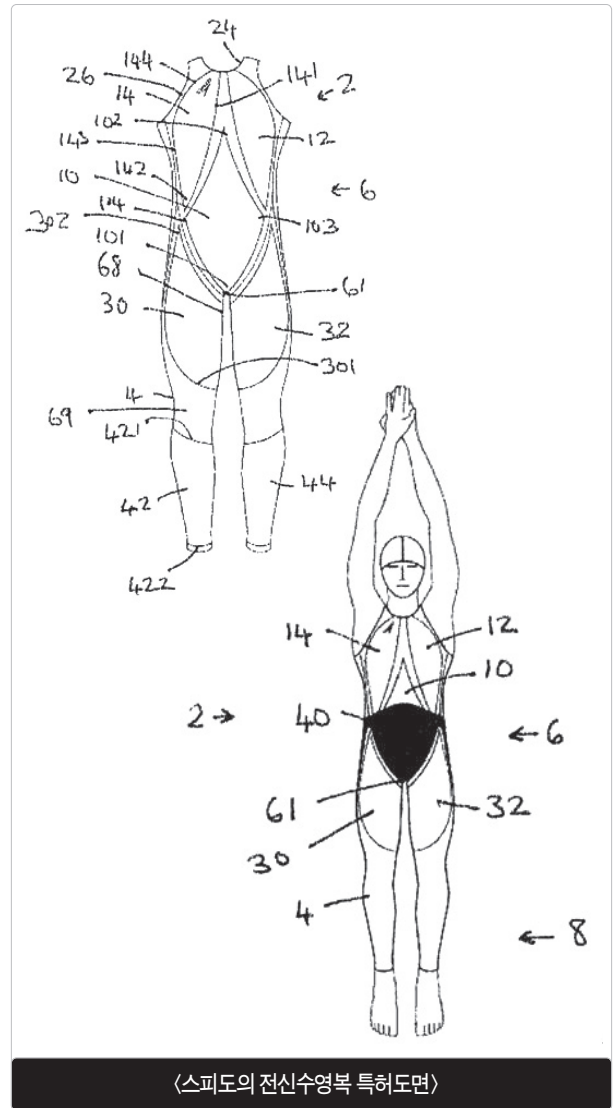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전신수영복이든, 반신수영복이든 수영복 과학기술의 핵심은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여 물의 저항을 줄여주고 최소화시켜주는 것이다. 수영을 할 때 생기는 저항은 물이 몸을 타고 흐를 때 생기는 마찰저항과, 물살을 헤칠 때 생기는 조파(造波)저항인데, 첨단소재의 수영복은 이들 저항을 줄여준다.

특히, 영국의 스피도(SPEEDO)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전신 수영복은 가장 많은 저항이 발생하는 가슴이나 복부 부분에 폴리우레탄 소재의 패널을 부착하여 물이 해당 부위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고 선수의 자세를 안정화시키도록 하였다. 스피도(SPEEDO)사는 우리나라에서도 2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박태환 선수는 잠시 이 스피도사의 전신수영복을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껴서 지금까지도 반신수영복만을 착용하고 있다.

반신수영복을 착용하고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태환 선수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박태환 선수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입고 있는 수영복은 스피도(SPEEDO)사와 세계 수영복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아레나(ARENA)사의 제품이다. 아레나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에너지 리턴”이라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원리는 수영복 전면과

후면에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해 수영동작에서 생기는 반동을 에너지화시키는 것이다. 전면에는 신축성이 약한 소재, 후면에는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수영선수가 다운 킥을 할 때 신축성이 뛰어난 후면 소재가 늘어났다 복원되면서 힘을 증폭시킨다. 이 기술은 현재 특허출원 중으로 일본 츠쿠바대학 대학원 인간종합연구과의 다카키히데키 체육과학 박사가 기능성을 실험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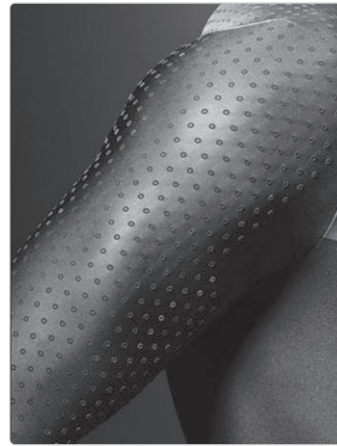
신어도 안 신은 것처럼 - 초경량의 운동화 기술

물 속이 스피도와 아레나의 각축전이라고 하면, 땅 위에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강력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나이키는 “Pro Turbo Speed”라는 운동선수용 라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나이키가 만든 가장 빠른 운동화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선보이는 나이키 운동화의 기술적인 특징은 표면의 뎀플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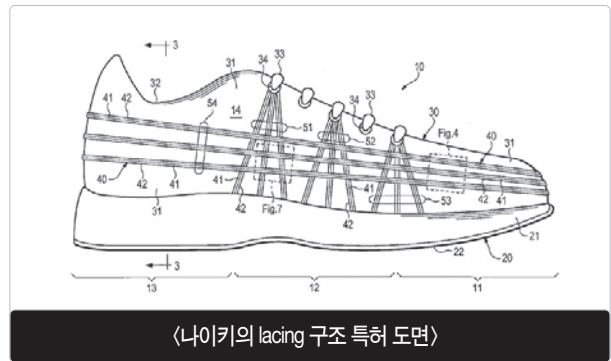
골프공 표면은 다수의 뎀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뎀플은 공기저항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발 표면에도 이러한 뎀플 구조를 형성하여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나이키는 뎀플구조를 운동화 뿐만 아니라 의류에도 적용하여 선수들이 기록단축을 통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나이키는 신발 자체의 소재도 첨단 소재를 사



용하여 경량화시키고, 신발끈을 묶는 방식도 밑창에서부터 레이싱 (lacing)이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착화감을 향상시켜 스피드 향상에 숨은 기여를 하고 있다. 나이키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발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 선수들이 신게 된다고 한다.



〈나이키의 lacing 구조 특허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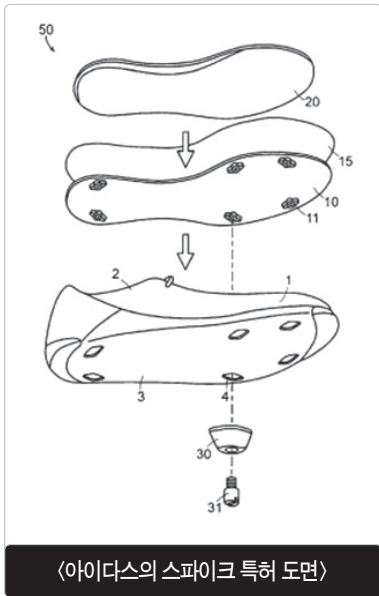
한편, 아디다스는 세계 최경량운동화 “아디제로프라임”을 내놓고 나이키와 올림픽에서 숨은 대결을 펼친다. 특히, 아디다스는 작년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에



〈아디제로프라임을 들고 있는 요한블레이크〉

서 1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자메이카의 우사인볼트를 제치고 우승했던 같은 나라의 요한 블레이크를 후원하고 있다.

아디제로프라임의 스프린트 프레임(Sprint Frame)은 기존의 단거리 러닝화보다 2배 이상 단단하면서도 두께는 평균보다 반 이상 얇은 (1.3mm) 스프린트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어, 선수들의 발을 지면과 보다 가깝게 해 향상된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강화된 탄소 나로 튜브 기술은 100m 레이스 중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아디다스의 특허받은



기술인 6개의 나노-세라믹 압축 핀은 제동력(브레이크 포스)을 최소화하고 빠른 스피드의 추진력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발에 부착된 핀들은 발과 지면을 더 가까이 해, 매 스텝마다 힘과 속도 그리고 안정감을 증가시켜준다.

한편, 세계 최고의 총알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푸마가 후원한다. 우사인볼트가 신는 “에보스피드 스프린트 LTD”는 아웃솔에 8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경우 6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볼트가 신는 에보스피드의 경우는 8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다. 스파이크 개수가 늘어나면 무게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볼트와 같이 중후반 가속능력이 뛰어난 선수에게는 가속성이 증가될 수 있다. 스파이크 갯수가 8개여서 다른 경쟁사의 초경량 제품보다는 살짝 무거운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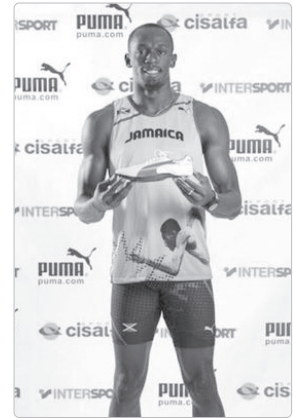
사실이지만 에보스피드 역시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스포츠 과학 기술의 특허 전쟁

이렇듯, 런던 올림픽은 운동 선수들의 올림픽이면서도 스포츠과학의 올림픽이기도 하다. 운동과학 기술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듯, 앞으로 이 분야의 특허 경쟁도 심해질 전망이다.

이미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등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들이 2007년 운동화 특허 침해 소송에 휩싸인 바 있다. 2007년 2월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상대로 운동화 특허기술 침해소송을 냈으며, 2007년 4월에는 리복 인터내셔널이 나이키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나이키는 아디다스가 운동화 밑창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삭스(Shox) 특허기술을 침해해 자사 러닝화와 농구화, 테니스화 등에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리복은 나이키가 운동화 밑창에 쓰이는 신축성 소재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세계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운동화 및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의 최강자들이 펼치는 스포츠 과학 올림픽을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이다. 2012. 8 |





‘올림픽(Olympic)’의 ‘림픽(lympic)’도, ‘올림피아드’도 쓰지 마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IOC의 ‘올림픽’ 상표권 주장을 둘러싼 제 문제

런던 올림픽이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본 호에서는 ‘올림픽(Olympic)’ 상표를 둘러싸고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작년 12월말 대한체육회(K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SK가 10월 완공한 핸드볼 전용 경기장 이름에 올림픽이란 표현을 넣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¹⁾ 또한, IOC는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선정된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보호하기 위해 비후원사들이 교묘하게 올림픽을 활용해 광고하는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



매복 마케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용대 선수의 P&G 페브리즈 광고는 P&G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손연재 선수의 LG 휘센 광고는 LG전자가 공식 후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TV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라고 한다.²⁾

이와 같은 IOC의 강경한 조치에 따라 비후원사들은 IOC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림픽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 ‘올림픽’, ‘런던 2012’ 등 IOC가 사용을 제한한 직접적인 올림픽 표현 용어들의 사용을 자제하고 최대한 올림픽 느낌만 풍길 수 있는 브랜딩/마케팅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 IOC가 ‘올림픽’ 상표가 상업적으로 남용되는 예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하지만, IOC는 ‘올림픽’ 사용을 승인해 주어야 마땅할 것만 같은(?) 대회 및 단체에도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예로, IOC는 신체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며 실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대해서 ‘림픽(lympic)’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수학·로봇 올림픽아드 및 각종 기능올림픽에까지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상표권 행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개가 갸웃겨진다.

이하에서는, IOC의 이런 강경한 상표권 행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관련 IOC 규정 및 국내법 규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올림픽’을 포함한 상표 출원을 우리나라 특허청 및 심판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향후 ‘올림픽’ 사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올림픽’의 상표 등록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국내법은 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 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의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 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1) 뉴스 링크 참조: <http://news.hankooki.com/lpage/sports/201201/h20120107023735111960.htm>
 2) 뉴스 링크 참조: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72355>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 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본 호는 IOC 뿐만 아니라 국기, 국장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보호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자가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에 그 제도적 취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림픽’ 명칭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본 호를 적용하여 상표 출원을 거절하고 있다.

서문에서 잠시 언급한 SK가 완공한 ‘핸드볼 전용 경기장’에 IOC가 ‘올림픽’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하여 SK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경기장 시설을 기부하면서 명칭 사용권을 얻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 출원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올림픽’, ‘Olympic’을 포함하는 상표들을 모두 거절되거나 취하한 상태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또는 ‘Olympic’ 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1년에 ‘’ 상표 및 ‘’를 각각 15여 개의 상품분류에 상표 출원을 하였으나 2001년에 모두 거절되었으며, 이들 상표 출원에 대한 공통된 거절이유는 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였다. 이하의 그림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1년 특허청으로 받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췌한 것이다.

아무리 그 단체가 우리나라의 체육활동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올림픽’을 포함하는 상표는 국제적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을 포함한 어떤 상표도 등록하지 못했으며, SK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올림픽’ 명칭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Olympic’에 대한 상표권은 IOC(우리나라 상표권자 명칭 : 꼬미테 앙테르나씨오날 올림삐끄)에 있으며, ‘OLYMPIC’ 및 오륜기 상표를 포함하여 40건³⁾을 출원 및 등록했으며 이 중 ‘OLYMPIC’과 올림픽 ‘오륜기’에 대한 상표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SK로서는 씁쓸하겠지만 핸드볼경기장에 ‘올림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OLYMPIC’ 상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출원인	명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출원인코드: 219980051461)
	주소	서울 송파구 방이2동 88
대리인	성명	
	주소	
출원번호		40-2001-0011237
상품(서비스업)류		제 25 류

이 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상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상기기일까지 의견서를(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기기일에 대한 연장은 매회 1월, 총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유]

본원상표는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국제올림픽위원회)가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스포츠대회인 올림픽경기대회(Olympic Games)와 관련있는 “올림픽”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로서 국제적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번호	건본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자	상태	상품분류	도형코드	출원인
1	OLYMPIC	4520100003270 (2010.07.28)	4520120026401 (2012.04.26)			공고	16 37 40 05 17 27 31 39 10 11 12 18 21 28 02 13 22 33 36 38 44 01 15 20 23 29 30 34 45 24 08 09 19 25 41 04 06 07 14 35 42 03 26 32 43		고미터 영 테르나시오 날 올림피 크
2	OLYMPIAN	4520100003269 (2010.07.28)				출원	16 37 40 05 17 39 11 12 18 28 36 38 44 01 29 30 09 41 25 04 06 07 14 35 42 03 32 43		고미터 영 테르나시오 날 올림피 크
3	OLYMPIAN	4520120001138 (2012.03.07)				출원	10 11 12 44 09 42		고미터 영 테르나시오 날 올림피 크
4		4520100003272 (2010.07.28)	4520110090012 (2011.12.02)	4500388610000 (2012.03.07)		등록	16 37 40 05 17 27 31 39 10 11 12 18 21 28 02 13 22 33 36 38 44 01 15 20 23 29 30 34 45 24 08 09 19 25 41 04 06 07 14 35 42 03 26 32 43	240718	고미터 영 테르나시오 날 올림피 크

진 다른 신뢰성 있는 대회나 기관에는 ‘올림픽’ 관련 상표의 사용에 인색하게 구는 것은 오히려 IOC가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더욱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느껴진다. 2012. 8

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IOC로부터 상표의 사용권을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IOC의 ‘올림픽’ 사용에 대한 제재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대회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호하자는 제도적 취지를 넘어서서 조금은 과도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특히, 이미 국내 및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수학, 로봇 올림픽아드’ 나 기능 올림픽의 경우 IOC가 상표권을 주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IOC가 현재의 방침처럼 상표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는 ‘수학, 로봇 올림픽아드’, ‘기능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성을 존중 받아야 하는 장애인올림픽에까지 패럴림픽에서 ‘림픽’이라는 부분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표권의 지나친 권리행사일 뿐만 아니라 이는 인류의 존엄성,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할 것이다.

향후, IOC가 ‘올림픽’ 상표권 주장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나, 지금까지 거대한 자금을 후원한 공식후원사에게만 상표의 사용 및 광고를 관대하게 허락하고, 올림픽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



3) 우리나라는 1건당 상품분류 2개류 이상의 출원이 가능하며, IOC의 경우 중요상표에 대해서는 40여 개류의 다류출원을 한 바, 1상표 1개류가 1건이라고 한다면 300건 정도의 상표 출원 및 상표권을 확보한 셈이다.



특허가 장애물?

나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전도사(?)라 자칭하며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강의를 하였으며, 만나는 기업인들에게 특허 없이는 사업의 성공을 기대도 하지 말라고 단언하며 수없이 외쳐왔다.

21세기는 근육이 아닌 머리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창출하고 확산하자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침이 삶의 현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너무 허탈하고 야속하고 속상했던 경험을 얼마 전에 하게 되었다.

사연인즉 이러하다.

얼마 전 특허 문제로 상의하고 싶다는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기 위해 고향에 가던 중 광주를 방문했다. 선배가 이끄는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두 선후배는 허름한 선술집에 마주 앉았다. 몇 순배의 술잔이 돌자 선배는 특허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해 먹겠다며 하소연 아닌 피맺힌 사연을 이야기했다.

특허청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노력으로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돈 들여 특허를 획득했다. 그것도 예닐곱 개 되는 특허를 보유하면서, 연차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성을 가지고 말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사업에 특허에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시방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허기술을 왜 적용하느냐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왜 공무원에게 끼치려고 하느냐며 그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특허가 없거나 특허권이 풀려버린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옛날

기술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물론,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려는 심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도 우수기술로 인한 사업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특허도 없다고 감추어야 한다니, 지난 호에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렇게 특허가(사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외쳤던 나로서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던 순간을 생각하니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탁상공론처럼 외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치는 사업현장들을 너희들이 알아’ 하고 조소하고 있었을 수 많은 기업가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인양 부끄러워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특허를 준 특허청이 죄인인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식함이 죄일까? 아니면 감사한다고 들이대는 감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알팍한 이해력이 문제일까?

지금 거론된 자들을 보면 분명 다 공무원들이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각색하고 연출한 결과임은 분명하다. 아! 이래서 괴롭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아프다. 분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무원들은 규정에 있는 대로 공무를 잘 집행하고 있다고 변명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과연 그 규정대로 일했다고 해서 공무원은 떳떳할 수 있는 것일까? 답답하다.

이제 우리 국가행정도 내실을 기할 때가 되었다. 시민들이 부족한 인력과 시간을 투여해 잘못된 행정을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을 듣고 공무원들끼리의 소통이, 기관들끼리의 통섭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가슴을 열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기관의 이익 확보에 급급하는 조직이기주의를 벗어나 시민들의 세미한 고충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좀 더 큰 세상에 우리 정열을 쏟아 분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배와의 술자리를 마쳤던 지난 아픈 생채기를 더 좋은 세상의 변화로 보답하는 그 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중앙정부는 더 많이 지방정부와 만나서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확산, 보호라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을 정중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수의계약이라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자세를 버리고 그 안에 내용과 실체를 보고 옳고 그름을 선 판단해서 자라나는 지식재산권 강화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금 신발끈을 묶고 지재권 전도사의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기업가들을 가슴으로 안으면서 그들의 고충과 현실의 애로를 같이 고민하며 덜어주고 싶다.

후덥지근한 장마철 날씨가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던 나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 선배를 생각하니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한 줌 장대비가 내려서 이 답답한 마음들을 쓸고 갔으면 좋겠다. 특허가 장애물이 아니라 진정 창작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을 꾸어본다. 2012. 8 |



이 승 중 심판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여기서 잠깐



책과의 만남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우리 땅에서 나는 265가지 자원 식물의 정보를 총망라하다!

우리 땅에서 자라는 자원식물의 재발견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현직 특허청 심사관이자 심판관인 저자 조식제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초, 산나물, 버섯 등의 자원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책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물부터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등의 높은 산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까지 260여 종을 선별하였다. 각 약초에는 생육 장소와 시기, 손질법, 효용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관련 특허와 연구 논문 정보도 수록하였다. 또한 피부 미백과 주름살 개선과 같은 한방 화장품으로의 이용 가능성과 혼동되기 쉬운 약초를 구별하는 방법, 증상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약초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저자가 전국 방방곡곡 높은 산을 다니며 직접 찍은 1,700여 장의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식물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저자: 조식제

저자 조식제는 전 지식경제부 사무관, 현 특허청 서기관, 심사관, 심판관, 마산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변리사, 약용식물관리사, 네이버 카페 '약초천국' 매니저, 네이버 블로그 '如雲 如旅' 운영, 우리숲진 블로그 3, 4기 나뭇잎 블로거, 한국발명진흥회 월간 《발명특허》에 기고.



저 자_조식제
출판사_아카데미북





Report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최근 공조 및 냉동 기계분야 특허기술 동향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독일의 특허소송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및 중국 우선심사제도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Report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3

변리사 소송대리의 허용

EU 공통특허법원의 설치를 위한 국제조약의 초안의 제28조는, 변호사 또는 유럽특허소송 자격증을 갖는 유럽특허변리사(EPA)가 단독으로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유럽특허변리사의 동 법원에서의 소송대리(representation)가 허용될 전망이다.

변리사 소송대리 찬반론

EU 공통특허법원(EUPTC)의 논의과정에서, 동 법원에 제기된 특허사건의 소송대리를 일반변호사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추가적으로 특허변리사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유럽 변호사협회(CCBE :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는 유럽 변리사의 소송대리 허용을 포함하는 EU 공통특허법원의

설치를 위한 국제조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동 협회(CCBE)의 사무총장 조나단 골드스미스(Jonathan Goldsmith)는 상기 국제조약안의 제28조는 유럽특허변리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변리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또는 징계를 다루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협회(CCBE)는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이 기술적 내용뿐 아니라 법률의 적용과 해석이 판단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나, 변리사의 경우 일반 법률에 대한 지식, 경험, 교육이 부족하므로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는 특허소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협회(CCBE)는 국제조약안의 제28조 제2항을 수정하여 전문변호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적정교육을 받아 소송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특허소송의 대리인을 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 변리사협회(EPI : European Patent Institute)는 2009. 2. 26자 루드비히 막스밀리안스 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산하 혁신연구소의 비용효과 분석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변호사를 단독으로 선임하여 대리할 것인지 또는 복수의 변호사-변리사를 선임하여 소송사건의 대리를 의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이는 경쟁을 유발하여 소송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비용의 감소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U 공통특허법원(EEUPC) 소송대리 관련 조항

현행 EU 공통특허법원(EEUPC) 설립을 위한 국제조약안에 따르면 동 법원에서는 3가지 유형의 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즉, 회원국 변호사의 단독대리, EPA 단독대리, EPA와 공동대리를 통한 일반 변리사의 진술권 허용이 가능하다.

동 국제조약안 제28조 제1항은 “당사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서 대리권을 갖는 법률가에 의해 대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안의 제28조 제2항은, 유럽특허협약 제134조에 의거 유럽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가진 변리사로서 EU 특허소송자격증(Patent Litigation Certificate)을 가진 자는 EU 공통특허법원(EEUPC)에서 대리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약안의 제28조 제2a항은 특허변리사가 구술심리에서 변호사 또는 EU 특허소송자격증을 가진 변리사를 보조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당사자 반응

한편, 노키아 UK, IBM UK, BP 등 영국의 주요 기업 37개사로 구성된 IP 연합(IP Federation)은 특허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EU 공통특허법원

(EEUPC)관련 국제조약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EU 공통특허법원의 재판부가 기술판사와 법률판사로 구성된다는 점을 들어, 기술적 지식을 갖는 특허변리사에 대해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특허법원 등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한 결과, 의뢰인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리인을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허소송의 당사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특허변리사들이 특허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EU 공통특허법원(EEUPC)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특허변리사는 EU 공통특허법원(EEUPC)이 도입되면, 기존에 허용되었던 유럽특허청 기술심판부의 의의신청 절차에서의 대리권과 함께, 무효·침해 소송사건에서의 대리권까지 부여받게 됨으로써, 특허관련 소송에서 변리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EU 특허소송자격증(Patent Litigation Certificate)을 가진 유럽특허변리사는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변리사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 조약 안은, EU 회원국 내에 단일 특허법원을 도입하는 효과와 함께, 동 법원에서 특허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각국의 특허소송 관련 대리제도를 조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4 판사의 자질논란

EU 통합특허법원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의 판사의 전문성과 자질이다.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특허법적 이슈를 판단해야 하는 특허소송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느냐의 문제는 동 법원의 존재 의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합특허법원의 판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 특허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독일과 그렇지 않은 동구유럽의 국가들의 판사들은 역량과 경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동일한 사안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1978년 유럽특허청이 출범할 당시에도, 특허심사관의 국적을 모든 유럽특허협약의 회원국인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럽특허청에 근무하는 심사관이면 국적에 상관없이(기술이 발달한 독일 국적 심사관이거나 상대적으로 기술발달 수준이 낮은 타국 심사관이던지) 동일한 품질의 심사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음을 근거로, 통합특허법원의 판사들의 자질 논란도 결국은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판사의 국적에 따른 재판의 수준의 차이가 큰 우려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특허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을 교육연수들을 통해 양성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특허무효 및 침해 소송에서 기술판사의 재판관을 어느 정도 비율까지 재판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3 회원국 법원의 준비 상황

EU 차원의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에 대비하여 주요 회원국 법원들은 자국의 특허소송 전담법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IT 기업들이 선호하는 소송지로 자리매김 해 왔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허 친화적인

(patent-friendly) 법원의 등장은 특허소송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대표적 법원이라 할 수 있다.¹²⁾ 뒤셀도르프 법원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25만 유로(20만 6천 파운드)이며, 이는 영국의 평균 소송비용(약 150만 파운드)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판사들은 특허사건에 대해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며 특허권자의 승소비율이 타 법원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동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왔다. 또한 다수의 특허사건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동 법원의 재판부는 기술과 특허법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축적하게 되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2012. 4월 EU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에 대비하여 역할의 강화 및 특허소송의 유치를 위하여 특허사건 전담 재판부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특허사건 전담 재판부의 조직 확대는 EU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시 지역부(regional division) 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글로벌 특허소송의 유치를 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 법원에서는 최근 애플, 삼성, MS, 모토로라 등 스마트기기 관련 특허소송 등 글로벌 기업들 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 뒤셀도르프 법원은, 2개의 특허전담 재판부 및 8명의 판사가 연간 600여 건의 특허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EU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에 대비하여 독

일 법무부는 현행 특허전담 재판부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최소 3명 이상의 판사를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뒤셀도르프 법원 등 독일법원은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기업들이 선호하는 소송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특허권자 친화적 성향과 판매금지 가치분 소송의 신속한 처리로 인해 특허소송 패소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자사제품의 판매 및 유통 금지에 대비하여 물류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독일을 회피하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법원의 특허권자 친화적인 성향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특허소송지로 독일을 선택하게 해 왔으나, 역설적으로 특허침해금지를 위한 판매금지 가치분 소송의 신속한 처리는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독일을 회피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MS는 모토롤라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윈도우7과 XBox 등 자사제품의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될 것을 우려하여 최근 물류기지를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하였고, 현재 모토롤라는 자사의 비디오 코덱 관련 특허 침해혐의로 MS를 독일 만하임 법원에 제소하였으며, 동 법원은 2012. 5월 MS가 동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영국 소액사건 전담 지식재산법원

영국 정부는 2011. 11월 현행 특허지방법원(Patent County Court)을 확대 개편하여 저작권, 상표, 디자인과 관련한 5,000 파운드 이하 소액 소송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은 별도의 법원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특허지방법원(Patent County Court)¹³⁾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며, 2012년 11월경 개원할 예정이다.

동 법원은 저작권, 상표, 디자인과 관련한 5,000 파운

드 이하 손해배상액 사건을 전담하며 소송비용을 낮은 수준의 고정 비용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영국 정부는 동 법원의 설립으로 연간 150여 중소기업이 350,000 파운드 이상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소액 소송사건 전담법원 설립은 2011년 5월 발표된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하그리브스 리뷰’(Hargreave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¹⁴⁾의 권고안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허소송의 절차 및 비용 등을 개선하여 영국 소송제도에서 급진적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액소송 사건 전담법원의 설립배경은, 그동안 영국에 비해 소송비용이 낮아 지재권 소송이 상대적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법원에 집중되자 영국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이 지재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소규모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제3자로부터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특허법원

스위스 정부는 특허재판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법원은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소송을 전담하며 세인트 갤런(St

12) 2010. 9월 미국 지재권 전문로펌 피넨건 헨더슨(Finnegan & Henderson LLP)의 발표에 의하면 2006-2009년간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특허권자의 승소비율이 63%(340건 중 213건 승소)를 차지했다.

13) 특허지방법원(Patent County Court, PCC) : 신속하고 간편한 지재권 소송의 진행을 위해 1990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런던의 중앙법원(Central London County Court)가 PCC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4) 상기 보고서는 지재권자가 5,000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50,000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영국 소송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영국 중소기업의 약 1/6(17%)이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으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Gallen)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의 4개 언어로 운영되고, 재판절차의 진행언어는 영어이다. 영어가 재판의 주 언어로 결정됨에 따라 미국 등 스위스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별도의 번역이 필요없이 영문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동 법원의 주요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위스는 단위 거주민 당 가장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국가로 유럽특허를 독일, 프랑스에 이어 많이 획득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많아서 향후 특허관련 소송은 증가할 전망이다. EU 차원의 공통특허법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법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스위스 연방특허법원은 26개 주(canton)의 재판절차를 조화시키고 지재권 전문성 결여로 인한 재판지연¹⁵⁾을 방지하여 연방차원의 사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과 특허무효(patent invalidation) 소송을 동시에 관할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¹⁶⁾

동 법원은 재판 소요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은 없지만, 상근 판사를 최소화하고 재판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부 판사(deputy judge) 제도를 활성화하여, 재판비용을 최소화함을 특징으로 한다.¹⁷⁾ 상근판사를 보좌하는 부 판사는 스위스 전역의 30여 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중 1/3은 변호사이며 2/3는 엔지니어로서 화학, 생명공학, 기계, 물리, 전자공학 등 5개 주요 기술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스위스 연방특허법원 설립은 소송절차의 간소화 및 소송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특허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며 동 법원은 소송비용이 낮아 지재권 소송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럽 특허 관련소송의 약 70%가 독일 법원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각 국의 지재권 전담법원의 설립추세에 따라, 스위스, 영국 법원에서의 소송사건도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위스 연방특허법원은 4개의 언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기술판사의 재판참석 등으로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므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이 스위스를 특허소송지로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에 대한 기대와 비판

1 제도도입 찬성론

EU 집행위는 통합특허가 도입되게 되면 번역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25개 회원국 전체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에 대한 취득 비용이 6,200유로 이하로 대폭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EU의 이산된 특허제도는 비단 EU 내부적으로도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뿐 아니라 EU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EU 시장의 이용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 시정을 요구해온 만큼 EU 지역 내외의 많은 특허제도 이용자들이 EU 통합특허의 발족 가시화를 반기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는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혁신에 보다 더 투자할 수 있고 유럽에서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시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의 기업들을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 Europe)은 최근의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EU 집행위의 입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동 단체는 강화된 협력 절차(enhanced cooperation)에 참여하지 않은 스페인과 이태리도 조만간 동 체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EU 통합특허법원(EEUPC)의 설치는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 전문 법관 및 기술 전문가의 참여, 저비용의 재판 기회 보장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유럽은 통합특허법원 관련예산을 법원 자체 수수료만으로 충당하는 현행 안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EU 회원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받아 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중소기업 또는 개인에게 재판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유럽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일관된 법 해석이 중요하고 일치된 판례법의 정착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법률판사와 함께 특허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판사(technical judge)의 역할이 중요하며, 균형된 판결을 위해 여러 국적의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동 단체는 EU 회원국 내에 각각 설치되는 회원국 법원(local division court)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고 번역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소송 건수의 다수에 따라 권역별로 복수 회원국들을 그룹화한 지역 법원(regional division court)의 설치가 보다 매력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도입 예정제도에 대한 비판론

특허출원의 번역비용을 줄이고 유저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최근 EU의 특허제도 개혁이 EU 기업과 EU

에 출원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대량 특허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EU의 전체 특허소송의 약 70%가 독일법원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 뒤셀도르프 법원에 70% 정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전체 EU 특허소송의 약 50%가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독일법원은, 판사들의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낮은 비용으로 신속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여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비 EU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특허소송시 독일 또는 영국 법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도입될 EU 공통특허법원의 이용으로부터 오는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영국의 특허변호사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와 영국의 산업계는, 현재의 통합특허법원 관련 입법안이 1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특허분쟁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EU 통합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판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동 입법안 반대 로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100만 명의 유럽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유럽변호사협회(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CBE) 등 변호사 단체들은 실효성 부족,

- 15) 지방법원(cantonal court)의 판사는 특허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외부 기술전문가를 특허소송에 참여시켜야 하므로 재판의 장기화와 소송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 16) 스위스 연방특허법원은 연간 30여 건의 특허소송을 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12건의 특허사건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이관되었다.
- 17) 연방특허법원에는 2명의 상급 판사가 근무하며, 제1판사 겸 법원장은 취리히 상업법원의 부판사를 역임한 Dieter Brandle, 제2판사는 특허변호사 출신의 Tobias Bremirk가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소송비용의 증가 및 법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현 EU 공통특허법원 설립안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CCBE의 선임 법률자문관 피터 맥나미(Peter McNamee)는 “도입 예정인 공통특허법원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문제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예측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존속의의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현 공통특허법원 설립안 중, 특허 법원의 운영재원, 재판 진행언어, 판사의 선발 및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재권 변호사협회(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Association)의 의장인 필립 웨스트마콧(Philip Westmacott)은 현 공통특허법원 설립 안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까우며 지나치게 서둘러 동 법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등 EU 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하기 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EU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하게 될 경우, EU 1개 회원국 법원의 판결이 전체 회원국에 미치게 되므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 등 특허소송의 승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산업계(특히 의약업계)의 경우, 통합특허시스템의 출범에 따라 1개국 판결이 다수국가에 효력을 미치게 되면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을 우려하는 등 산업별로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 통합특허법안 처리 전망

EU 통합특허 개혁안은, EPO (유럽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받은 하나의 특허로 EU 전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EU 공동체 특허법원을 설립하여 특허의 무

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을 전담토록 하자는 것을 요지로 한다.

이하의 표는 현행의 유럽특허 제도와 도입예정인 EU 특허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현행제도와 도입 추진 중인 EU특허 제도 비교

	현행 제도	도입 추진 중인 제도
명칭	유럽특허 (European Patent)	EU특허 (EU Patent)
근거	유럽특허조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EU 집행위 합의문
대상국	유럽특허조약(EPC) 회원국	EU 회원국
운영 기관	EPO	EPO
특허권의 성격	지정국에서만 유효한 각각의 특허 집합 (bundle)	EU 국가 전체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
특허권 인정 요건	EPO 등록 후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 및 등록	EPO 등록
번역 비용	EPC 회원국 등록 시 각국 언어로의 번역 비용 필요 (13개국 등록 시 평균 번역비용 14,000유로 소요)	출원 시 EU특허 공식언어로만 제출하면 충분 (번역비용 600~700유로 예상)
사법 절차	각국 제도와 법령에 따름	통합특허법원 설립을 통한 단일화를 추진하였으나 유럽 사법재판소가 해당 조약안이 EU 조약과 불합치된다고 판단



EU 통합특허 도입, 공통특허법원 설립 등 EU 특허 개혁을 위한 법안은 EU 특허 출원인들의 특허권 획득 비용을 80% 이상 줄이고, 특허소송에서 EU 회원국들

간 상이한 특허법 적용을 방지함으로써 EU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유럽특허 개혁법안의 3개 법안(단일 EU 특허, 특허문헌 번역 및 공동특허법원)은 2012년 중 패키지로 처리¹⁸⁾될 전망이다. 보다 간편하고 접근 용이한 특허시스템의 구축은, EU 기업들로 하여금 단일 사법권하에서 단일 언어로 운영되는 단일 특허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 미국 등의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EU 회원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특허개혁 법안은, 2011년 폴란드 의장국 체제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2012년 상반기 신임 덴마크 의장국 체제하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덴마크 특허청(DKPO)의 콩스타드(Konstad) 특허청장은 그간 EU 특허개혁을 위해 전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온 만큼, 덴마크 의장국 체제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비록 EU 27개 전체 회원국에서 2개 국가가 빠진 2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이긴 하지만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EU 통합특허 관련 2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이고 2011. 12.19. 유럽의회의 법사위가 동 법안에 찬성 투표함으로써 2012년 중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EU 집행위는 2013년경 최초의 EU 통합특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을 위한 조약안은 형사적 절차를 포함한 혼합협정(mixed agreement)이므로 회원국들간 별도의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개최하여 조약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2014년 1월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에는, 현 EPO의 공식 언어 체계가 EU 통합특허제도 도입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출원과정에서는 통합특허의 장점을

많이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나 등록단계에서는 번역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등록 절차 또한 간소화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유럽특허를 출원해 왔던 많은 출원인들¹⁹⁾이 EU 통합특허를 출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탄생할 예정인 EU 특허개혁법안이 회원국들 간 잔여 재정들에 대한 합의를 거쳐 마침내 유럽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12. 8 |



박진석 특허관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 18) 상기 3개 법안은 전체가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 부결 처리될 예정이며, 특허개혁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럽의회 법사위는 3개 법안이 같은 시기에 발효되도록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 19) 한국 출원인들은 유럽특허청에 2011년 13,3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유럽특허청 전체 출원 건의 5.5%를 차지하였다.



최근 공조 및 냉동 기계분야 특허기술 동향

국내 출원/등록 동향

공조기계분야는 냉장고·에어컨 등을 포괄하는 분야로 전체 특/실 출원의 약2%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에어컨, 환풍기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고, 냉동기계와 냉동사이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체 출원건수는 최근들어 감소추세에 있으나 차량 냉난방장치, 냉동사이클 등 일부 분야는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건수를 보면 '09년 1295건에서 '11년 1654건으로 28% 가까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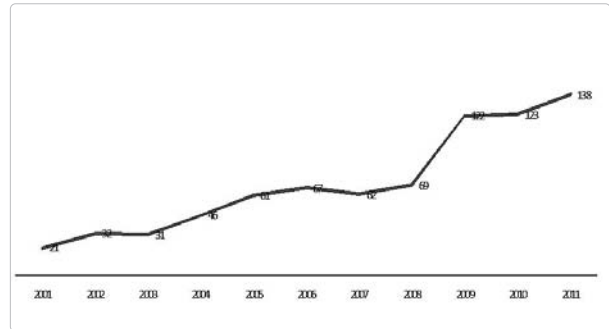
IPC	주요기술내용	출 원					등 록				
		'09	'10	'11	'12.1월 ~2월	출원 소계	09	'10	'11	'12.1월 ~2월	등록 소계
B60H	차량 냉난방 장치	365	344	392	58	1159	117	90	100	28	335
F04B	왕복동식 펌프	361	343	260	48	1012	154	144	190	22	510
F04C	회전 펌프	178	158	207	45	588	49	54	96	17	216
F04DF	비용적형 펌프	322	384	324	52	1082	113	113	120	26	372
F24F	에어컨·환풍기	1046	933	938	130	3047	337	423	433	107	1300
F25B	냉동사이클	462	415	448	78	1403	130	158	229	32	549
F25D	냉동기계	681	715	574	89	2059	256	139	312	33	740
F28BCD	열교환기	244	195	197	29	665	66	70	86	19	241
F28F	열교환장치	188	183	119	27	517	73	76	88	21	258
공조기계 분야 출원 건수(A)		3847	3670	3459	556	11532	1295	1267	1654	305	4521
특허청 전체 특허/실용 건수(B)		180667	183762	190687	27682	582798	60681	73144	100573	15726	250124
A/B(%)		2.1	2.0	1.8	2.0	2.0	2.1	1.7	1.6	1.9	1.8

해외 출원 동향

PCT에서는 왕복동식 펌프와 에어컨, 환풍기에 대한 출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왕복동식 펌프와 열교환 장치에 대한 출원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에어컨, 환풍기와 냉동사이클에 대한 출원이 많이 출원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비용적형 펌프, 에어컨, 환풍기, 왕복동식 펌프에 대한 출원 비중이 높다.

‘08~‘09년도 출원동향을 보면 PCT, 미국, 일본 모두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이나, 중국은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또한, 중국의 출원은 미국과 일본 출원의 합한 건수보다도 많아 중국에서 냉동 공조 분야의 기술경쟁이 치열함을 엿볼 수 있다.

친환경 냉난방 장치 관련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



는 가운데 공기 중이나 地中·水中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이거나 냉난방을 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친환경 급탕·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2001년 21건에서 2011년 138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를 기술별로 살펴보면, 지하수(지열)에 의한 것이 32%, 태양열에 의한 것이 20%, 공기열에 의한 것이 17%, 하천수·해수에 의한 것이 17%, 기타 14%로 나타났다.

IPC	주요기술 내용	PCT				미국				일본				중국			
		'08	'09	'10.1-10	소계	'08	'09	'10.1-10	소계	'08	'09	'10.1-10	소계	'08	'09	'10.1-10	소계
B60H	차량 냉난방 장치	210	156	130	496	222	230	112	564	925	565	532	2022	346	399	325	1070
F04B	왕복동식 펌프	630	453	436	1519	874	723	572	2169	1262	834	598	2694	1643	2388	2056	6087
F04C	회전 펌프	301	274	242	817	214	139	101	454	1004	705	552	2261	1001	1052	724	2777
F04DF	비용적형 펌프	461	383	465	1309	564	623	513	1700	1126	950	725	2801	2453	3327	2815	8595
F24F	에어컨, 환풍기	525	495	532	1552	760	763	257	1780	2852	2504	1960	7316	2842	3335	3008	9185
F25B	냉동 사이클	475	557	445	1477	297	290	638	1225	1836	1319	970	4125	2067	2136	1709	5912
F25D	냉동기계	541	440	387	1368	654	673	565	1892	937	700	586	2223	910	1086	1040	3036
F28BCD	열교환기	365	324	342	1031	586	686	483	1755	601	543	397	1541	1587	1738	1301	4626
F28F	열교환 장치	319	324	301	944	667	804	653	2124	744	608	468	1820	538	1793	1392	3723
계		3827	3406	3280	10513	4838	4931	3894	13663	11287	8728	6788	26803	13387	17254	14370	45011

세부 주요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친환경 냉난방 기술 특허출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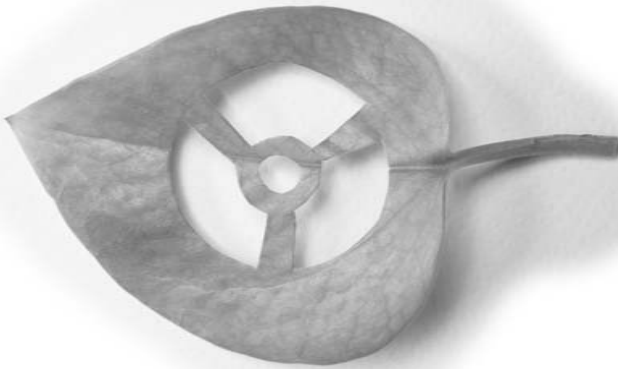
최근 친환경 녹색 기술이 지구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

공기 중이나 지중·수중의 열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열 에너지를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열이동 기계를 이용하여 열을 모으고 배분하면,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급탕과 냉난방이 가능하므로 지구온난화의 주역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기나 가스로 급탕하거나 냉난방하는 것에 비해 20% ~ 5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술은 차세대의 급탕기 및 냉난방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이 조기에 특허를 받아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인 「초고속 심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냉난방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녹색기술과 관련된 출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심사를 통해 조기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그린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열쇠이다. 그린에너지 중에서도 땅속의 열인 지열은 건물의 냉난방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열냉난방은 땅속의 온도가 연중 15-20도로 유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하 100-200미터에 파이프를 묻고 물을 순환시켜 여름에는 냉방에, 겨울에는 난방에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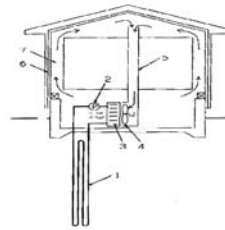
지열냉난방은 부수적으로 전기를 소비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를 땅속에서 얻기 때문에 냉난방시스템 중 가장 효율이 높다.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의 발표에 따르면 지열을 이용할 경우 냉난방 비용이 30 내지 40%가량 절감되고, 에너지 소비량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열의 이용과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출원된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지중열교환기’가 전체 출원의 거의 절반인 49%, 지열을 이용한 ‘열펌프’가 29%, 기타 관련기술은 22%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열냉난방을 이루는 주요 장치가 지하에 설치되는 열교환기와 지상에 설치되는 열펌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중열교환기는 땅속에서 열을 얻거나 내보내는 일을 하고, 열펌프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열을 빼내어 온도가 높은 곳으로 전달하는 핵심장치이다.

지열냉난방은 유지비용이 적게 들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또 땅속 깊이 파이프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나 쇼핑센터 같은 단체시설에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사정이 좋은 미국과 유럽도 관련기술의 연구와 보급에 힘쓰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열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 열교환기 개념도



지하에 매설한 파이프(1)에 물을 순환시켜 지하에 열을 취득한 후, 라지에이터(3)에서 지하의 열과 실내를 순환하는 공기를 열교환하여 주택의 냉난방에 이용

차량 에어컨 분야

꽃가루 등 이물질 제거, 탈취 등 차내 공기 정화 기술개발 활발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제2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자동차업계는 자동차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공조기술이 자동차의 상품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

식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내 공기의 오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배기가스 및 공기 중의 미생물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이고, 두 번째는 '내장재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등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이다.

이러한 오염원을 제거하여 차내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특허출원은 한라공조, 두원공조, 현대모비스 등 국내업체가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요타자동차, 다이킨공업 등 외국 업체들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차내 공기 정화관련 특허출원은 2001년 168건에서 2011년 243건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45% 정도 증가하였다.

기술 유형별로 차내 공기정화 기술을 살펴보면, 단순히 먼지나 꽃가루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제진필터에서 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는 탈취필터,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알레르겐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제거하는 향균 필터, 비타민C 등 기능성 입자를 도포하여 실내로 송풍시 입자를 방출하는 기능성 필터와 차량에서 방출되는 배기가스, 가축분뇨, 폐수 등 다양한 악취의 오염도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외부 공기의 유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AQS(Air Quality System)장치 등이 있다.

기술개발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단순히 필터를 장착하여 차내 공기 중의 부유 먼지를 걸러주는 정도였으나, 여기에 음이온 발생기를 추가하여 살균기능을 부가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된 클러스터 이온발생기가 개발되어 공기 중의 부유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발기 표면을 직접 살균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냉장고 분야 기술 동향

육아용품, 막걸리, 화장품 전용냉장고 등 다양한 기능성 냉장고 출원증가

냉장고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특수한 디자인과 복합기능을 구비하여 무한 변신하고 있다. 냉장고의 본래 기능인 음식물 보관 이외에 특별한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진 냉장고의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함을 뛰어넘는 이러한 냉장고는, 디자인이 독특하거나, 특수 음식물 전용, 정보 제공, 건강관리 등과 같은 별도의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크게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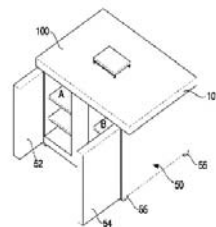
디자인이 독특한 냉장고로서, 도어의 색상이 변하거나, 냉장고의 폐열을 이용하여 침대를 구비하거나, 냉장고 및 식탁 겸용, 도어에 사진을 표시하는 전자 앨범 기능을 가진 냉장고 등을 들 수 있다.

특수 음식물 전용 냉장고에는 육아 물품의 일괄 보관 및 소독이 가능한 육아용품 전용 온·냉장고, 막걸리 또는 와인 전용 냉장고, 반찬 전용 냉장고, 초음파를 이용해 술을 숙성시키는 주류 냉장고, 진공실이 형성된 화장품 전용 냉장고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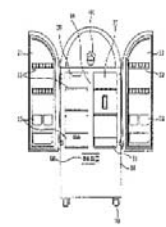
정보 제공형 냉장고에는 보관된 음식재료에 따른 추천요리를 제공하거나, 보관 식품의 저장기간·산출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냉장고 내의 재고 음식물 확인이 가능하거나, LCD모니터를 이용한 메모장 기능을 구비한 냉장고 등이 있다.

건강관리 등 기타 특수기능을 추가한 냉장고에는 체지방·체온·맥박측정, 입력된 개인별 신상정보에 따라 추천 운동 및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 화재 및 가스누출,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된 냉장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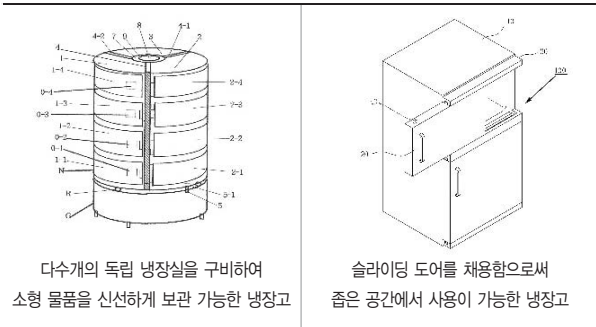
앞으로도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냉장고는 끊임 없는 무한변신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윗면을 식탁으로 사용 가능한 식탁 겸용 냉장고



다양한 육아 용품을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보관 가능한 육아용품 전용 온장 및 냉장고



에어컨 분야 기술동향

세균·유해물질 제거,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기술 등 건강 고려한 출원 증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현대인, 그러나, 실내 공간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각종 휘발성 물질이나, 스프레이, 황사, 흡연 등으로 인한 오염된 공기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감기 및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세균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실내에 쾌적하고 깨끗한 바람을 내보내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에어컨 관련 건강기술 특허출원은 2001년 6건에서 2011년 31건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허출원을 통해 본 최근 공기정화기술은 종래에는 참숯, 황토, 필터 등을 사용하여 먼지를 집진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먼지 뿐만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유해물질의 제거와 음이온 및 산소공급, 습도 조절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 예로, 방전을 통해 물을 분해·무화(霧化)시켜 살균하는 기술, 에어컨이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검출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향을 배출하는 기술, 실내온도와 습도로 산출된 감기지수를 기초로 하여 이상적인 감기지수가 되도록 실내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는 기술, 실내의 활동량을 감지하여 감지된 활동량에 따라 취침모드 등의 운전모드를 결정하는 기술 등이 있다.

고찰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조냉동 분야 특허출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PCT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그 출원건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대조를 이룬다.

이는 한국·미국·일본 등은 이제 공조냉동 분야의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중국은 현재 급격한 성장단계에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조 냉동 분야의 신기술 개발의 특징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등 친환경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한 점이다. 그린 에너지를 이용한 기술개발은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강화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등과 같은 친환경적 공조냉동분야의 기술개발은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이다.

아울러, 친환경성이 높은 특허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른바, 에코 특허평가제도 등이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공조냉동 분야의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이 기대된다. 2012. 8 |





특허 Q&A

Q.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언어는 무엇입니까?

- ▣ 국제출원언어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
- ▣ 한국특허청이 수리하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어, 영어, 일어입니다.
- ▣ 2009년도 이후 국어로 출원시에는 국제출원서(REQUEST)와 명세서 언어가 동일해야 합니다.

Q. 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

- ▣ 청구범위 보정(PCT19조 보정 : Article19)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제사무국(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님에 주의)에 청구범위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명세서등 보정(PCT34조 보정 : Article34)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전(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횡수에 관계 없이 명세서, 청구 범위,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독일의 특허소송

최 근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세계 3대 경제블록 중 하나인 유럽에서는 독일에서의 특허소송 결과가 다른 나라의 유사한 특허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 파급력은 최근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만하임 보통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뒤셀도르프 보통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불인정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은 유럽에서의 비슷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유럽 전체 시장에서 제품판매 전략을 수정하게 하였다. 따

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발명가가 유럽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독일의 특허제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본 원고에서는 독일의 특허소송 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독일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심사

특허상표청

독일의 특허상표청은 연방법무성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독립적인 연방 고등기관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출원과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독일특허상표청은 뮌헨에 본부를 두고 있고 베를린과 예나(Jena)에 지부를 두고 있다. 2010년 현재 2,7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2,609명)에 비해 직원 수가 4.8% 증가하였다. 뮌헨 본부에 2,4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베를린 및 예나에 311명이 근무한다.

〈독일 특허상표청 직원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독일특허상표청 직원 수 (전년대비 증감률)	2,556	2,501 (Δ 2.2%)	2,500 (0.0%)	2,609 (4.4%)	2,735 (4.8%)

독일특허상표청은 기계장치, 자동차, 건설분야를 심사하는 특허1국(Department 1/I), 전기전자 장치 및 화학분야를 심사하는 특허2국(Department 1/II), 정보화 및 전산검색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국(Department 2),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의 심사를 담당하는 상표·실용신안·디자인국(Department 3) 그리고 인사 및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국(Department 4V) 및 법률사무를 관장하는 법무국(Department 4R)으로 조직되어 있다.

특허

독일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독일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¹⁾을 해야 하고, 특허상표청은 출원일부터 18개월²⁾ 후에 출원을 공개한다. 실제심사는 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심사청구³⁾를 기다려 심사관이 한다. 실제심사 결과 특허부여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결정을 하고 특허공보를 통한 공고가 이루어지는데, 특허의 법적 효력은 특허공보에서의 공고와 더불어 발생한다.⁴⁾ 심사관은 특허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한다. 특허부여의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특허상표청 특허부에 이의신청⁵⁾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한쪽 당사자가 신청하고 상대방이 2개월 이내에 반대하지 않으면 독일특허청 특허부 대신에 연방특허법원 심판부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⁶⁾ 특허에 대해 무효선언을 요구하는 자는 연방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⁷⁾. 특허 출원 및 등록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

〈독일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특허	출원	60,585	60,992	62,417	59,583	59,245	58,997
	종결처리	38,140	34,297	33,193	32,074	32,799	26,467
	등록결정	21,034	17,739	17,308	14,435	13,678	11,891

실용신안

독일 실용신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실제심사 없이 단순한 형식심사를 통해 등록하는 것⁸⁾이다. 다만, 독일특허상표청은 청구에 의하여 해당 실용신안과 관련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발행하

- 1) 독일특허법 제34조제1항
- 2) 독일특허법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2조
- 3) 독일특허법 제44조제2항 : (심사)청구는 출원의 제출 후 7년이 만료되기 전에 출원인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심사절차의 이해관계인이어서 안다(이후 생략).
- 4) 독일특허법 제58조제1항 : 특허의 부여는 특허공보에 공고되고, 동시에 특허명세서도 공고된다. 특허공보에 공고됨으로써 특허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 5) 독일특허법 제59조제1항 : 누구든지 특허부여의 공고 후 3개월 내에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하 생략).
- 6) 독일특허법 제61조
- 7) 독일특허법 제73조 제1항 : 심사와 또는 특허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며⁹⁾, 누구든지 실용신안의 등록취소¹⁰⁾를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

〈독일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건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용신안	출원	19,776	18,083	17,067	17,306	17,005	15,486
	종결처리	19,674	18,397	17,263	16,568	18,334	17,007
	등록결정	16,638	15,469	14,347	13,916	15,476	14,230
	취소청구	230	193	216	163	168	-

상표 · 디자인

독일상표특허청은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다음과 같다.

〈독일 상표 ·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상표	출원	80,319	83,673	80,772	74,822	74,362	69,117
	등록	58,698	61,880	56,502	55,613	54,177	55,733
디자인	출원	51,014	54,301	48,238	44,714	49,091	52,585
	등록	46,557	56,208	49,146	35,431	48,453	47,887

독일의 지식재산권 소송

사법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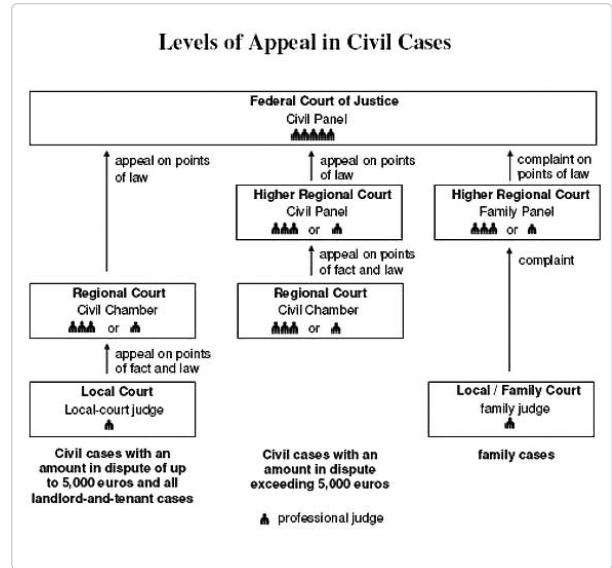
독일은 16개 주(州)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인데, 독일 기본법은 분야별로 최고법원¹¹⁾을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법원체계가 크게 다르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보통법원, 행정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 조세사건을 다루는 조세법원, 노동사건을 다루는 노동법원, 그리고 사회사건을 다루는 사회법원으로 구분된다.

모두 하급법원은 각 주(州)의 법원이고, 최고법원은 연방법원이다.

보통법원은 민사·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687개의 보통법원지원, 116개의 州 보통법원, 24개의 州 항소법원, 그리고 1개의 연방최고보통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사소송 중 소송가액이 5천 유로 이하인 소송은 보통법원지원이 1심을 담당하고 주 보통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데 비해, 소송가액이 5천 유로를 초과하면 주 보통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주 항소법원이 2심을 처리한다. 가사소송은 보통법원지원이 1심을 담당하고 주 항소법원이 2심을 담당한다. 모든 사건의 최종심은 연방최고보통법원이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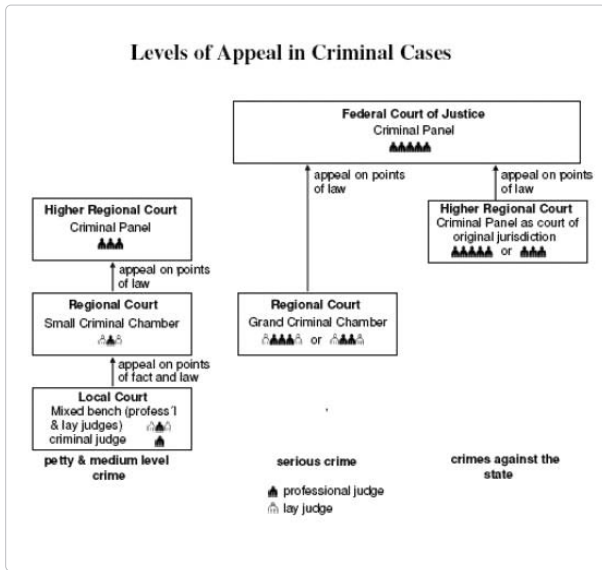
〈독일의 민사소송 체계〉



일반적인 형사소송의 경우 보통법원지원이 1심을 담당하고 주 보통법원이 2심을 담당하며 주 항소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하는데 비해, 중대한 범죄의 경우 주 보통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연방최고보통법원이 최종심

을 담당한다. 한편, 국가적 안위에 관한 형사범죄는 주 항소법원이 1심을, 연방최고보통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한다.

〈독일의 형사소송 체계〉



행정법원은 52개의 지방행정법원, 16개의 고등행정법원 그리고 연방최고행정법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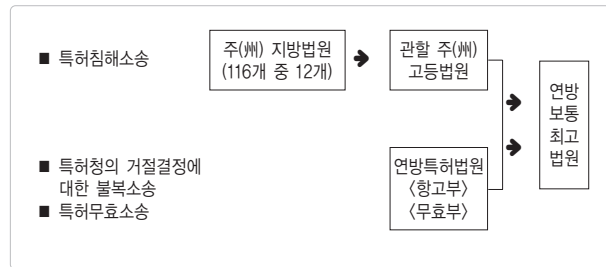
노동법원은 122개의 지방노동법원, 19개의 고등노동법원, 연방최고노동법원으로 구성되며, 조세법원은 19개의 지방조세법원, 연방최고재정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법원은 69개의 지방사회법원, 16개의 고등사회법원, 연방최고사회법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원 외에 연방헌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방헌법재판소¹²⁾가 있는데 16개의 주(州)헌법재판소 및 연방최고헌법재판소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의 특허소송 체계

독일의 특허소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무효소송¹³⁾ 및 독일특허상표청의 거절결

정에 대한 불복소송¹⁴⁾은 연방특허법원의 전속 관할인데 비해, 특허침해소송¹⁵⁾은 보통법원이 관할한다. 즉 독일특허법 제143조 제1항은 '본 법이 규제하는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일체의 (침해)소송은 소송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민사부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특허소송 체계〉



한편 독일특허법은 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州) 정부가 법령에 의해 복수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특허소송을 담당할 하나의 지방법

- 8) 독일실용신안법 제8조제1항: 출원이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출원 대상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 9) 독일실용신안법 제7조: (1) 청구에 의해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대상의 보호 적격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간행물을 조사한다. (2) 이 청구는 출원인, 등록실용신안권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다.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10) 독일실용신안법 제15조: (1)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자로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할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등록 실용신안의 대상이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경우
 2. 등록 실용신안의 대상이 선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경우
 3. 등록 실용신안의 대상이 최초로 제출된 출원의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11) 독일기본법 제95조
- 12) 독일기본법 제94조
- 13) 독일특허법 제65조
- 14) 독일특허법 제65조, 독일실용신안법 제18조, 독일반도체체치보호법 제2조, 독일상표법 제66조, 독일산업디자인보호법 제10조
- 15) 독일특허법 제143조제1항

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州가 지정한 특허침해소송 전담 지방보통법원은 12개이며 다음과 같다.

〈독일 특허침해소송 담당 지방법원〉

법원명	관할구역 (토지관할)	법원명	관할구역 (토지관할)	법원명	관할구역 (토지관할)
베를린 지방법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자르뷔르겐 지방법원	-
함부르크 지방법원	브레멘, 함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슐레스비히홀 슈타인	에프푸르트 지방법원	튀링겐	만하임 지방법원	바덴뷔르템 부르크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	니더작센	라이프찌히 지방법원	작센	뉘른베르크 뤼스 지방법원	밤베르크와 뉘른베르크 고등법원 관할구역
마크테부르크 지방법원	작센안할트	프랑크 푸르트 지방법원	헤센, 라인란트팔츠	뮌헨 지방법원	뮌헨고등법원 관할구역

한편, 독일의 특허 무효 소송체계는 우리나라와 약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¹⁶⁾을 제기하여야 하고, 별도의 특허무효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특허무효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특허 무효소송은 연방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¹⁷⁾.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원고 적격을 갖지만,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등록권자만이 피고 적격이 있다. 무효를 제기하는 기간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특허부여의 공고 후 3개월 이내¹⁸⁾) 및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때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¹⁹⁾ 무효사유는 독일특허법 제22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1) 특허의 대상이 특허가 능하지 않은 경우 2) 특허가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자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고 완전하게 발명이 개시 되지 않은 경우, 3)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 발명의 설명, 도면, 기구, 장치 또는 사용방법으로부터 타인의 동의 없이 도출된 경우(모인출원), 4) 특허의 대상이 해당하는 최초 특허출원의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 5) 특허의 보호범위가 확장된 경우이다. 무효의 소를 통하여 특허무효의 결정이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대세효로서 해당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²⁰⁾



독일의 연방특허법원

1) 연방특허법원의 설립

독일의 보통법원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이 연방특허법원이다. 연방특허법원은 독일기본법 제96조제1항, 독일특허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뮌헨에 위치하고 있다. 연방특허법원이 신설되기 전에는 독일특허상표청의 항고심판부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자, 특허청의 항고심판부는 법원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소송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 그

리고 독일연방최고행정법원이 1959년 6월 13일에 독일 특허청 항고심판부는 법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항고심판부의 결정은 행정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법원을 통해 사후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설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독일입법부는 1961년에 독일기본법을 개정하여 연방특허법원을 신설하고 종전까지 독일특허청의 항고부 및 무효부가 수행하던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2) 기능

독일연방특허법원은 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 반도체 배치설계, 상표, 디자인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담당한다. 또한 특허권의 무효여부에 대해 심판하며, 강제 실시권의 허여²¹⁾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3) 구성

독일연방특허법원 판사는 법률판사와 기술판사로 크게 구분된다. 독일특허법 제65조 제2항은 “연방특허법원은 법원장, 재판장 및 기타 판사로 구성된다. 그들은 독일판사법에 따른 판사직위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법률적 구성원), 또는 기술의 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자(기술적 구성원)이어야 한다. 기술적 구성원은 국가 또는 대학의 최종시험을 합격한 자이어야 하며, 법 제26조 제3항이 준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특허법 제26조 제3항은 독일특허상표청에 근무하는 기술적 구성원(특허심사관)에 관한 규정으로 “그들은 종합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광업대학에서 기술 또는 과학 관련 과목에서 최종적으로 국가 또는 대학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그 이후에 최소 5년간 과학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자로 제한된다”고 되어있다. 기술판사는 일반적으로 독일특허상표청에서 정규심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

서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1년간 위탁판사로 근무 후 종신직 기술판사로 임명된다. 2010년 현재 연방특허법원의 판사는 110명인데, 그 중 61명이 기술판사이고 나머지 49명은 법률판사이다.

〈독일연방특허법원의 판사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술판사	58	58	61	65	61
법률판사	59	62	57	53	49
합계	117	110	118	118	110

독일연방특허법원은 무효부, 법률항고부, 기술항고부, 상표항고부, 실용신안항고부, 품종항고부 등 29개 부로 이루어져 있다.

특허 무효부는 6개부(제1~5부, 10부)가 담당하는데, 각 합의부는 2명의 법률판사와 3명의 기술판사로 이루어져 있다. 법률항고부는 1개부(제10부)가 담당하며 법률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기술항고부는 13개부로 구성되어 특허거절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며, 기술판사 3인과 법률판사 1인으로 합의체를 구성한다. 상표항고부는 8개부(제24~30부, 33부)가 담당하고 법률판사 3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실용신안항고부는 제35부가 담당하는데, 재판장인 법률판사를 포

16)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7) 독일특허법 제81조제1항
 18) 독일특허법 제59조제1항 : 누구든지 특허부여의 공고 후 3개월 내에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하 생략).
 19) 독일특허법 제81조제2항
 20) 독일특허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1조제2항 참고
 21) 독일특허법 제65조 및 제81조

합하여 총 3명으로 구성하고, 품종항고부는 제36부가 전담하며 법률판사 2인, 기술판사 2인으로 구성한다.

〈독일연방특허법원 합의부 구성〉

	무효부	법률 항고부	기술 항고부	상표 항고부	실용신안 항고부	품종 항고부	
부	6개부	1개부	13개부	8개부	1개부	1개부	
	제1부~제5부, 제10부	제10부	제6~9부, 제11, 12, 14, 15, 17, 19, 20, 21, 23부	제24~30부, 33부	제35부	제36부	
업무범위	특허무효, 강제실시권 허여	기타 법률 관련 사건, 디자인보호 관련 사건	특허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상표결정에 관한 항고사건	실용신안 및 반도체 배치보호 관련 항고	품종보호 관련 항고 사건	
관련법령	독일특허법 제66조제1항제2호	디자인보호법 제23조	특허법 제66조제1항 제1호	상표법 제66조, 제67조	실용신안법 제18조, 반도체배치보호법 제4조	품종보호법 제34조	
합의부 구성 방법 2)	판사	5명	3명	4명	3명	3명	4명
	재판장	법률판사	법률판사	기술판사	법률판사	법률판사	법률판사
	배석 판사	기술판사3 법률판사1	법률판사2	기술판사2 법률판사1	법률판사2	(출원각하) 법률판사1, 기술판사1 (등록말소) 기술판사2 (기타사건) 법률판사2	기술판사2 법률판사1

4) 독일연방법원의 처리건수

독일연방특허법원의 무효부가 처리하는 특허무효소송은 매년 200~250건 정도이다.

〈독일의 특허무효소송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신규접수	221	234	275	228	255
처리건수	199	235	237	227	242
계류건수	351	350	388	389	402

또한, 연방특허법원은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 이의, 각하결정 등에 대한 불복소송도 매년 2,000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독일연방특허법원의 항고소송 건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법률항고부	53	48	47	61	58	
기술 항고부	거절결정불복	694	588	750	683	598
	이의결정불복	676	6	1	9	8
상표항고부	1,216	1,044	961	1,068	1,465	
실용신안항고부	80	87	113	141	55	
품종항고부	0	0	0	0	1	
합계	2,719	1,773	1,872	1,962	2,185	

5) 연방특허법원의 사건처리기간

연방특허법원의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0년 기준으로 무효부는 21개월, 기술항고부는 49개월, 실용신안항고부는 17개월, 상표항고부는 14개월, 법률항고부는 21개월 가량이다.

6) 연방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연방특허법원 무효부 및 항고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최고보통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연방특허법원 무효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항소할 수 있고²³⁾ 특별한 항소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효부 판결에 대해 연방최고보통법원은 법률적 관점 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 심리하게 되며,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심리를 하게 된다. 2010년의 경우 112건의 특허법원 무효부 판결 중 85건에 대해 항소되었다(75.9%). 한편 최고법원은 111건을 처리하였는데, 52건은 합의·취하 등으로 종결되었고, 59건이 최종판결에

의해 종결되었다. 59건 중 29건에 대해서만 최고법원이 항소이유를 인용하였다. 결국 전체 항소사건 중 약 26%(29/111)에 대해 최고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한편, 연방특허법원의 항고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연방 최고보통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이때의 최고법원은 법률적 관점에서만 심리하게 되고, 상고는 일정한 다음의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첫째, 연방특허법원이 상고를 허용하는 경우이다.²⁵⁾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이거나, 법률의 해석 또는 판례법상 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최고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를 상고 이유로 하는 경우로 이때에는 특허법원의 상고허가가 필요 없다.²⁶⁾ 예를 들면, 법원의 합의부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인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심문권이 거부된 경우 등이다. 2010년의 경우 특허법원이 상고를 허용한 건수는 14건이었고, 허가가 필요없는 상고는 21건이었다. 최고법원은 17건의 허가된 상고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11건은 인용, 6건은 기각하였다. 또한 허가가 필요한 상고에 대해 8건 중 4건의 상고를 인용하였다.

독일 특허침해소송

독일에서 특허침해소송 1심은 약 1,400여 건, 2심은 약 250건에 달하고, 이 중 550~600건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²⁷⁾ 이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특허권 보호에 호의적이고 권리를 더욱 넓게 인정하며 신속히 재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자료²⁸⁾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다루는 국가는 독일로 연간 1,446건(2008년), 프랑스 400건, 영국 111건 등

인데, 독일에서는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지방법원이 독일특허소송의 약 2/3를 다룬다고 한다.

한편, 독일연방특허법원이 담당하는 특허행정소송과 일반민사법원이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의 법적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심으로서 독일연방최고보통법원은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사건을 항상 민사합의 제1부에 배정하고, 특허, 실용신안, 반도체회로 배치설계 및 품종보호에 관한 사건은 민사합의 제10부에 배당하여 처리하고 있다. 2012. 8 |

다음 호에 계속



임 호 순

특허청 정밀기계심사과장

22) 독일특허법 제67조, 디자인보호법 제10조a, 반도체배치설계보호법 제4조, 실용신안법 제18조, 상표법 제13조 등

23) 독일특허법 제110조

24) 독일특허법 제100조제1항

25) 독일특허법 제100조제2항, 독일상표법 제83조제2항

26) 독일특허법 제100조제3항, 독일상표법 제83조제3항

27)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A guide to patent litigation in Germany", July 2011.

28) JUVE Rechtsmarkt 04/10, pp 79.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및 중국 우선심사제도

중국변리사회(ACPAA)-한국변리사회(KPAA) 합동세미나가 북경에서 최근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양국의 업계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특허의 경우에는 우선심사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해있지 않은 관계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더욱 중요한 특허절차로 취급되었으며, 최근 중국 특허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심사제도를 발표하였다.

실질심사청구제도¹⁾

(특허법 제35조)

第三十五条 发明专利申请自申请日起三年内,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随时提出的请求,对其申请进行实质审查;申请人无正当理由逾期不请求实质审查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的时候,可以自行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

-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이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그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实质审查)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撤回)된 것으로 본다.
- ②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는 경우, 직권(自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청구기간

특허법 제35조에 의하여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실질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특이한 점은 우선권 주장출원인 경우, 우선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이다.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심사청구기간은 2년으로 단축될 수 있어 외국출원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²⁾.

요건

실질심사청구서

실질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질심사청구서는 중국특허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실질심사청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항목에 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을 기재한다. 두번째 항목은 청구 내용으로서, “특허법 제 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세번째 항목에는 첨부목록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출원서류에 대한 대체 서류, 출원일 전에 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 외국에서 당해 발명에 대하여 검색한 자료, 외국에서 당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의 자료를 제출하는지 표시하는 것이다.

실질심사비

실질심사청구서의 제출과 함께 실질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실질심사비(관납료)는 2500원 이다.

효과

적법한 경우

실질심사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실질심사의 절차가 개시된다. 심사관은 실질심사청구가 규정에 부합하면, 출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실질심사절차진입통지서를 발행한다³⁾.

부적법한 경우

- (1) 실질심사청구를 제출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이 되었을 때, 출원인이 아직 실질심사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만료 전에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⁴⁾.
- (2) 실질심사청구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간주된다.

종전의 우선심사제도

개요

중국특허법은 우선 심사에 대한 명문의 법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심사지침에 대한 운영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특허법 제61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⁵⁾.

1) 김태수, 중국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1, 27—33면 참조

2) 한국의 경우,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심사청구는 우선일이 아닌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출원일로부터 5년의 심사청구기간이 보장되어 외국출원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

3) 실질심사를 청구하여 실질심사절차 진입통지서가 발송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2주 이상이라고 한다.

4) 专利审查指南, 第一部分第一章 6.4.2, 2010년.

5)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①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③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④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으로서,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상당히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

우선심사

심사지침⁶⁾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만 특별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출원

출원인 또는 그 주관부문이 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청장이 비준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청이 직권으로 실질심사를 진행한 특허출원

특허법 제35조 제2항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는 경우, 직권(自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항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국가사회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중국 특허청이 동항을 적용시켜 실질심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다고 한다⁷⁾.

원출원일이 유효한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과 함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분할 출원에 대한 심사는 이러한 이유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무상의 적용

중전 우선심사에 대한 규정이 심사지침에 있지만, 분할출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상 거의 활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출원인이 중국에서 빠른 심사를 통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국 특허청은 우선심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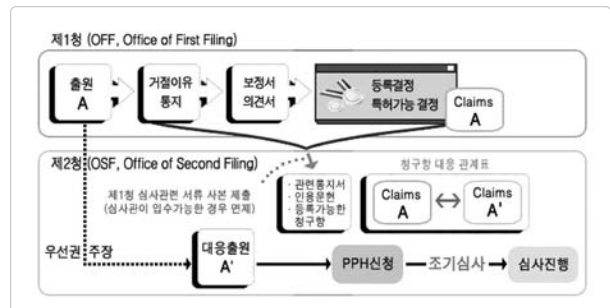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개요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출원인 여러나라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허심사의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아래의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1청(Office of First Filing)에 제출한 특허출원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특허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은 제1청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2청(Office of Second Filing)에 조기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는 각국 특허청의 심사부담의 경감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기 심사를 통하여 빠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기간 및 의견제출통지서 횟수의 감소를 통하여 심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출원인이 등록여부에 대한 예상을 가능케 한다.



[출처: 한국 특허청 주요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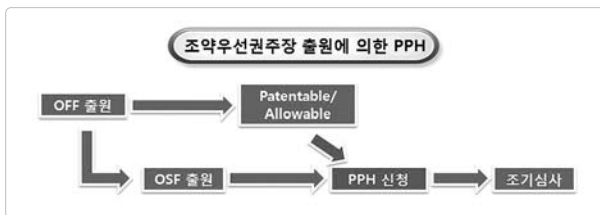
한-중 PPH

한-중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는 2012년 3월 1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는 크게 일반적인 PPH(常规的PPH)와 P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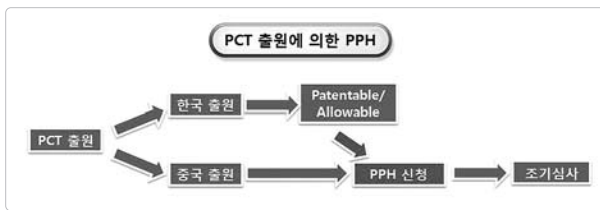
PPH로 구별되며, 한-중간 PPH도 동일하게 2가지로 구별된다.⁸⁾

일반적인 PPH

제1청에 선출원을 진행하고, 제2청에 조약 우선권주장 출원을 진행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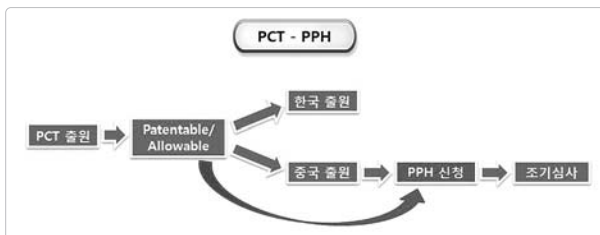


아래는 PCT 출원을 통하여 PPH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PCT-PPH

PCT 출원이 국제단계의 심사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에 진입한 출원에 대하여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신청요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는 경우를 상정해본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제1청이 한국특허청이고, 제2청이 중국특허청이다.

일반적인 PPH

중국출원과 한국출원이 연관성이 있을 것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는 중국출원이거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PCT 출원이 한국 및 중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거나, PCT 출원을 파리조약에 의하여 우선권 주장하는 중국출원인 경우에는 한국출원과 중국출원은 연관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분할출원의 원출원이 위의 경우를 만족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국출원에서 등록가능성을 인정받은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할 것

등록가능성을 인정받은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구비하며, 중국출원은 이에 대응하는 청구항을 가져야 한다. 중국출원의 청구항 권리범위는 등록가능성을 인정받은 대응청구항보다 좁거나 동일하여야 한다. 예시 1은 한국출원과 중국출원이 충분히 대응되는 경우이며, 예시 2는 한국출원과 중국출원이 충분히 대응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⁹⁾. 중국출원의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넓거나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청구항에 대응하도록 보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1]

情形	“具有可专利性”的权利要求		PPH 权利要求		对应性
	权利要求	表述	权利要求	表述	
情形 1	1	A	1	A	PPH 权利要求 1 与 “具有可专利性” 的权利要求 1 相同。
情形 2	1	A	1 2	A A+a	PPH 权利要求 1 与 “具有可专利性” 的权利要求 1 相同。 PPH 权利要求 2 是在 “具有可专利性” 的权利要求 1 的基础上增加在说明书中披露的技术特征而成。
情形 3	1 2 3	A A+a A+b	1 2 3	A A+b A+a	PPH 权利要求 1 与 “具有可专利性” 的权利要求 1 相同。 PPH 权利要求 2、3 分别与 “具有可专利性” 的权利要求 2、3 相同。
情形 4	1	A	1	A+a	PPH 权利要求 1 增加了在说明书中披露的技术特征。

6) 专利审查指南, 第二部分第八章 6.4.2, 2010년.
 7)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 新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01, p241
 8) 金源, ACPAA-KPAA Intellectual Property Seminar 2012 자료 참조
 9) 중국특허청 PPH 및 PCT-PPH 이용 신청에 관한 중국특허청 웹사이트 자료 : <http://www.sipo.gov.cn/ztlz/ywzt/pph/>

[예시 2]

情形	“具有可专利性”的权利要求		PPH 权利要求		说明
	权利要求	表述	权利要求	表述	
情形 5	1	A 产品	1	A'方法	PPH 权利要求 1 要求保护一种方法, 然而“具有可专利性”的权利要求 1 要求保护一种产品。(“具有可专利性”的权利要求的技术特征与 PPH 权利要求的技术特征相同, 然而, 权利要求的类型不同。)
情形 6	1	A+B	1	A+C	PPH 权利要求 1 与“具有可专利性”的权利要求 1 在要求保护的发明的组件上不同。(PPH 权利要求改变了“具有可专利性”的权利要求的部分技术特征而成。)

중국출원이 이미 공개되었을 것

PPH 신청서를 제출시 또는 제출 전에 출원인이 중국특허청으로부터 출원공개 통지서를 수령하였어야 한다. 중국 특허법 제34조에 따르면,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 출원공개된다. 또한, 특허청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조기 공개할 수 있다.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하였을 것

출원인은 PPH 신청 전에 또는 신청시에 중국특허청으로부터 실질심사진입통지서(发明专利申请进入实质审查程序通知书)를 수령하였어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실질심사청구와 함께 PPH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실질심사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실질심사 청구서 또는 실질심사진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자진보정이 가능하다.

심사의견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

PPH 신청시 중국특허청이 심사의견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PPH 신청시 중국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PPH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중국출원은 반드시 전자출원일 것

중국출원이 서면출원이 아닌 전자출원인 경우에만 PPH 신청이 가능하다. 중국은 실제로 전자출원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PPH 신청을 위하여 전자출원으로 변경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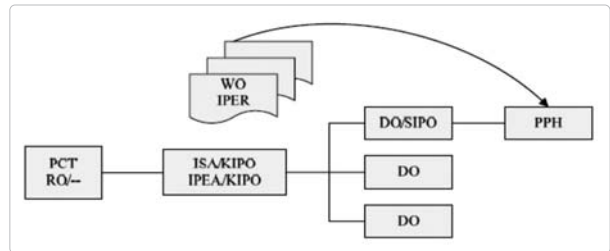
PCT - PPH

위의 일반적인 PPH 신청요건과 다른 점은 i) 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ii) PCT 출원과 중국출원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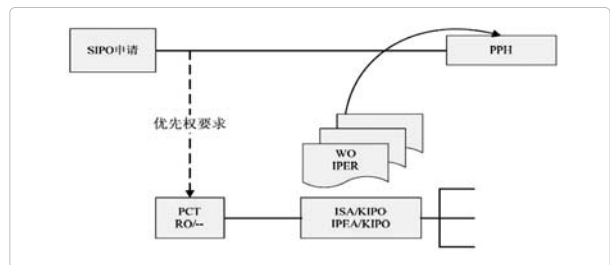
중국 출원에 대응되는 국제출원의 ‘긍정적인 심사결과’란 국제조사 견해서(WO/ISA : 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국제예비심사 견해서(WO/IPEA : 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y) 또는 국제예비심사 보고서(IPER : Written Opinion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에서 특허성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PCT 출원과 중국출원은 아래와 같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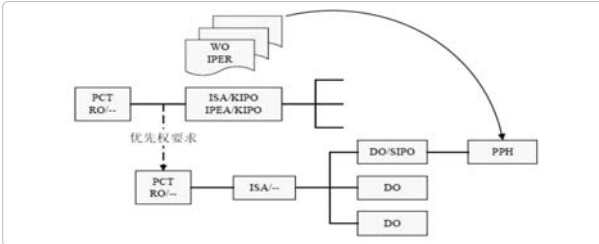
PCT 출원에 대응하는 중국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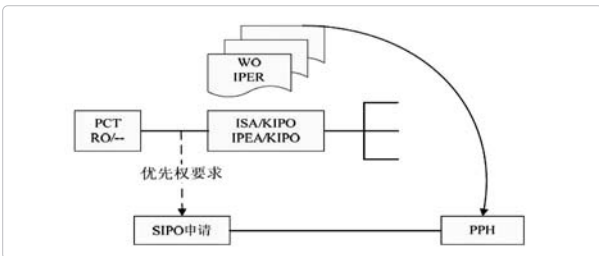
중국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는 PCT 출원이 있는 경우



대응하는 PCT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는 PCT 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PCT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는 중국출원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신청시기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PPH 신청시기는 중국출원이 출원공개되고 실질심사가 청구된 후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실질심사 청구와 함께 PPH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출원공개가 이루어진 후 실질심사 청구와 함께 PPH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실질심사진입통지서를 수령한 후 심사의견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PPH 신청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출원인은 한 건의 중국출원에 대하여 이러한 2가지의 기간동안 PPH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신청서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신청서

중국특허출원의 서지사항(출원번호, 출원인, 발명명칭), 일반적인 PPH인지 PCT-PPH인지 선택란, 한국출원에 대한 설명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의 사본 및 이에 대한 중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가능성을 인정받은 청구항 및 그 번역문

한국출원에서 등록가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청구항의 사본 및 이에 대한 중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PCT-PPH의 경우에는 청구항이 등록가능성이 있다는 한국특허청 또는 WIPO의 최근 판단 결과(국제조사보고서만으로는 불가함)의 사본 및 이에 대한 중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특허청의 심사관이 인용한 인용문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인용문헌이 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출원인은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출원인은 인용문헌의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청구항 대응관계표

청구항 대응관계표는 아래와 같으며, 제1칼럼에는 중국출원의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고, 제2칼럼에는 한국출원에서 등록가능성이 인정된 청구항의 번호를 기재하고, 제3칼럼에는 대응관계를 설명한다. 대응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한지, 어떤 기술특징을 추가하였는지 등을 설명한다. 아래는 그 예시를 보여준다¹¹⁾.

本申请的权利要求	对应申请中被认为可授权的对应权利要求	关于对应性的说明
1	1	完全相同
2	2	完全相同
3	1	权利要求3在对申请权利要求1的基础上引入了说明书第X页第X段记载的技术特征X
4	2	权利要求4在对申请权利要求2的基础上引入了说明书第Y页第Y段记载的技术特征Y
5	1	权利要求5在对申请权利要求1的基础上引入了说明书第Z页第Z段记载的技术特征Z

10) 중국특허청 PPH 및 PCT-PPH 이용 신청에 관한 중국특허청 웹사이트 자료 : <http://www.sipo.gov.cn/ztl/ywzt/pph/>
 11) 중국특허청 PPH 및 PCT-PPH 이용 신청에 관한 중국특허청 웹사이트 자료 : <http://www.sipo.gov.cn/ztl/ywzt/pph/>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한 고찰

중국 특허출원은 우선일로부터 3년 내에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질심사 기간은 2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현재 많은 한국기업들이 특허출원시에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특허를 등록받는데 한국출원일로부터 총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서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유효특허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써 조기 심사를 진행하여 유효특허를 확보하고, 분할출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권리범위를 가지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 우선심사를 진행하여 등록가능성을 판단받은 후에, 중국에서 조기공개 신청을 진행한 후 실질심사와 동시에 PPH를 신청한다면 빠른 등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할출원에 대하여도 PPH를 인정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특허일수록 분할출원에 PPH를 신청하여 다양한 권리범위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2012년 신설된 우선심사 규정

개요

중국 특허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 출원인이 조기심사를 통하여 빠른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것과 발을 맞추어 전면적으로 우선심사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¹²⁾

우선심사가 가능한 특허출원(관리방법 제4조)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하이테크 첨단 장치의 제조,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형태의 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영역의 중요한 특허출원
- 저탄소 기술, 자원 절약 등 그린 발전에 유리한 중요한 특허출원
- 동일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 선평특허출원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서 후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상기 선 특허출원
- 국가 이익 또는 공중 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우선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 제외 대상(관리방법 제3조)

중국 특허청과 기타 나라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관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양국간 협정 또는 다국간 협정에 근거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취급하고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특허심사 하이웨이 협정에 근거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관리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우선심사 신청요건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특허출원은 반드시 전자출원의 방식으로 제출한 출원이어야 한다.(관리방법 제6조 전단)

우선심사 청구시에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하지 않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은 반드시 실질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관리방법 제6조 후단)

우선심사 신청절차

우선심사 청구서(관리방법 제7조 제1항)

출원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식재산권국이 심사하고

의견을 명시하여 날인한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조사 보고서 또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관에서 발행한 조사보고서, 심사결과 및 그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관리방법 제7조 제2항) 동 관리방법 제8조에 의하면, 특허조사기관은 특허문헌 및 비특허문헌을 이용하여 특허조사를 진행할 능력이 있으며, 그 조사기관의 조사원이 전문적인 기술적 배경과 특허실무 및 특허조사 교육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심사 건수의 결정

동 관리방법 제5조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진행하는 발명 특허출원의 건수는 특허청이 각 기술분야의 심사능력 및 전년도의 특허등록 건수 및 당해연도의 심사대기 특허출원 건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심사 진행절차

우선심사의 결정

특허청은 우선심사 청구의 접수여부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내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관리방법 제9조)

우선심사의 진행

우선심사를 결정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우선심사청구를 인정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1차 거절이유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관리방법 제10조)

출원인의 답변기간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하여 2개월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답변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당해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반 출원으로 처리한다.(관리방법 제11조)

우선심사의 완료기간

특허청은 우선심사청구를 인정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우선심사 대상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관리방법 제2조)

결어

중국 특허청은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시행함과 더불어 우선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한다. 종전에 중국에서 우선심사 규정의 활용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출원인의 전략에 따라 심사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신설된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외국 출원인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이나 우선심사 신청절차가 외국 출원인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 특허청의 운영을 살펴봐야 활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국 출원인이 활용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설된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과 비교할 때, 빠른 권리 획득을 위하여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조기심사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출원인이 전략 특허에 대하여 빠른 권리 획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 8 |





〈인동덩굴, 금은화〉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실, 김선제 등,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2008년 6월 30일), “토복령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誘發)된 백서(白鼠)의 통풍(痛風)에 미치는 영향(影響)”

본 논문은 토복령 (SGR)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onosodium urate로 통풍이 유발된 백서에 SGR (50, 500mg/kg)을 5일 동안 전처리하고 혈청 내 알부민, 글로불린, AST (glutamate dxalacetate transminase), ALT (glutamate pyruvate transminase), BUN (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 요산, 크산틴 산화효소 활성,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WBC, 혈소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SGR 투여군은 통풍성 관절염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성이 없었다. SGR 투여군에서 AST, ALT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500mg/kg LC 투여군에서 BUN과 크레아티닌이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ESR은 모든 LC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WBC, 혈소판은 500mg/kg LC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크산틴 산화효소 활성은 500mg/kg SGR 투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토복령은 통풍 치료와 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미래덩굴, 토복령〉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계내과학교실, 이흥진 등,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2008년 6월 30일), “인동(忍冬)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誘發)된 백서(白鼠)의 통풍(痛風)에 미치는 영향(影響)”

본 논문은 인동(LC)이 monosodium urate로 유발된 백서의 통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onosodium urate로 통풍이 유발된 백서에 LC (50, 500mg/kg)을 5일 동안 전처리하고 혈청 내 알부민, 글로불린, AST (glutamate dylacetate transaminase), AL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BUN (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 요산, 크산틴 산화효소 활성, ESR(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WBC, 혈소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LC 투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풍성 관절염 크기, 혈청 알부민이 감소하였고 500mg/kg LC 투여군에서 혈청 글로불린, AST, ALT이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감소하였다. 500mg/kg과 50mg/kg LC 투여군에서 크산틴 산화효소 활성이 감소하였다. ESR은 모든 LC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WBC, 혈소판은 500mg/kg LC 투여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따라서 인동은 통풍 치료와 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형규 등, 동의병리학회지(1993년 10월), “蜂毒(Apitoxin)이 흰 쥐의 Adjuvant 關節炎에 미치는 影響”

봉독요법은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으나 실제 임상에서 만성 관절염이나 염증질환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천년전부터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봉독의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치료기전을 밝혀 봉독요법의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실험용 흰쥐에 Freun's complete adjuvant 액을 피하주사하여 관절염을 유발시키면서, apitoxin을 피하주사하여 부종률, 진통효과 및 소염작용을 측정한다. 그 결과, 치료군에서 부종률이 억제되었고, WBC 및 혈청 cholinestrace의 활성도가 감소되었으며, 동통역치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봉독요법은 소염, 진통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증, 역절풍 및 통풍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롯데중앙연구소 생물공학팀, 안봉전 등, 한국식품과학회지(1992년 12월 29일) “우롱차로부터 Xanthine Oxidase 저해물질 분리 및 구조”

Xanthine oxidase는 퓨린 대사에 관여하여 xanthine 혹은 hypoxanthine을 산화하여 요산을 생성하게 하는 효소이다. 이상 퓨린 대사로 인해 형성된 요산은 관절에 축적되어 통풍을 동반하는 통증을 유발한다. 본 연구는 천연물로부터 통풍치료제의 개발을 목적으로 우롱차로부터 6종의 flavan-3-ol 화합물을 분리하였고 기기분석에 의해 화학구조를 밝혔다. 각 화합물은 (-)-epicatechin, (-)-epicatechin-3-O-gallate,

〈말벌주〉



procyanidan B-1, B-3, procyanidin B-3-3"-O-rhamnose procyanidin B-1-3-O-gallate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 영향을 관찰한 결과 gallate가 결합된 flavan-3-ol 화합물이 저해활성이 강하였고 procyanidin B-1-3-

O-gallate는 완전한 저해효과를 나타내었고 xanthine oxidase에 경쟁적으로 저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금삼현 등, 경희한의대논문집 (1988년 12월 15일), “鍼·灸 및 Colchicine이 Microcrystalline Sodium Urate 投與 흰쥐의 痛風에 미치는 影響”

침구 및 colchicine의 통풍 치료효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microcrystalline sodium urate(MSU)로 통풍을 유발시킨 흰쥐를 대조군·침자극군·구자극군·colchicine 경구투여군 및 colchicine 정맥주사군으로 구분하여 각각 인체 무지의 대도(Sp2), 태백(Sp3), 행간(Liv 2)에 상응하는 흰쥐의 족부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침·구자극 및 colchicine 투여를 실시하여 족척 종창 증가율, 적혈구 침강속도, 백혈구수, 혈청 및 요 중의 uric acid와 creatinine을 측정하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차나무〉



1. 족척 종창은 침·구 및 colchicine 정맥주사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2. 적혈구 침강속도 및 백혈구수를 측정한 결과 colchicine 정맥주사군을 제외한 침·구 및 colchicine 경구투여군에서 높은 유의성을 지닌 감소를 나타내었다.
3. 혈청중 요산 및 creatinine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colchicine 경구투여군을 제외한 타군에서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4. 요 중 요산배설량은 대조군에 비하여 타군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5. 요 중 creatinine 배설량은 구자극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결과를 미루어 보아 침구요법이 통풍치료에 대하여 그 효능이 있음이 입증되어서 향후 임상적으로 통풍을 비롯한 유사한 질환까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특허등록 제10-395890호 “통풍 개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특허도 있다.

본 발명은 식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여 통풍에 의해 야기되는 동반질환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발효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통풍개선 효과가 있는 기능성 발효식품은, 연근 분말 27~54 중량부, 녹차잎 분말 2~4 중량부, 옥수수수염 분말 4~8 중량부, 함초 분말 2~4 중량부, 민들레뿌리 분말 1~2 중량부, 동충하초 분말 1~2 중량부, 차전자 분말 4~8 중량부, 다시마 분말 2~4 중량부, 현미 분말 0.5~1 중량부, 갯 분말 0.5~1 중량부, 호박 분말 1~2 중량부, 유향 분말 1~2 중량부, 양파즙 10~20 중량부, 매실즙 10~20 중량부를 혼합하여 반죽한 후 제조한 통풍환을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담글때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민들레〉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통풍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통풍은 당뇨와 마찬가지로 부자병에 속하는 질병으로서 유전적인 원인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고 단백질, 정제된 백미, 그리고 고 핵산식 등이 풍성하고

기름진 식단이 불러오는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풍이나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은 서서히 나타나므로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벌써 심각한 정도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오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통풍이나 당뇨를 약 한 알, 주사 한대로 완치하는 방법은 없다. 자신의 생활방식을 되돌아 보고 잘못된 습관은 고치는 것이 통풍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하겠고, 또한 검은색 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보라색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신장을 보하는 것이 되므로 원활한 요산 배출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 8 |



조 식 제 서기관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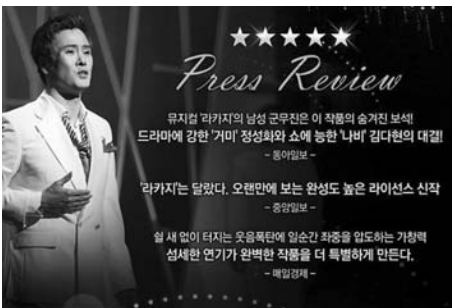


뮤지컬 “라카지”

시대를 초월한 화제의 뮤지컬<라카지> 드디어 한국 초연! 개막 첫날부터 이어지는 감동적이고 눈부신 환호의 기립박수!

때론 달콤하고 때론 씁쓸한 게 바로 인생! 이게 바로 우리야!
우리의 인생이 담긴 곳, 여기는 “라카지오편!”

POIN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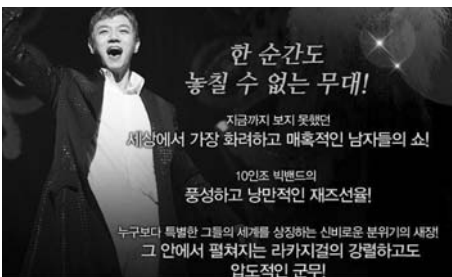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휴양도시 상트로페즈(Saint-Tropez)의 전설적인 클럽 '라카지오편'에는 클럽을 운영하는 게이 커플 조지(Georges)와 그의 아내 엘빈(Albin), 그리고 갓 스무 살이 된 두 사람의 사랑하는 아들, 장미셸(Jean-Michel)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카리스마와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모두에게 존경 받는 리더 조지는 클럽 '라카지오편'의 주인이며, 엘빈은 평소 히스테릭한 성격 탓에 주변을 긴장하게 만들긴 하지만, 폭발적이고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공연마다 기립 박수를 이끌어 내는 '라카지오편'의 전설적인 가수 '자자(ZAZA)'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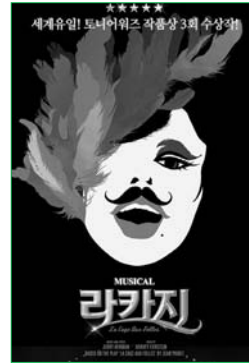
POINT 2



POINT 3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 장미셸의 폭탄선언으로 집안은 발칵 뒤집힌다. 바로 애인 앤(Anne)과의 결혼발표! 그러나 앤의 아버지는 게이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극보수주의 정치인 에두아르 댕동(Edouard Dindon)이다. 그런 그에게 남자아버지 조지



공연장소 : LG아트센터
공연기간 : 2012. 7. 4 ~ 2012. 9. 4
관람시간 : 165분
기획사 : ㈜악어컴퍼니, CJ E&M, PMC퍼러덕션

와 남자어머니 엘빈을 가족으로 둔 집안과의 결혼이란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 간곡한 아들의 부탁에 결국 결혼을 승낙해버린 조지. 그러나 장미셸은 결혼을 위해 엄마 엘빈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하고, 엘빈은 그런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어한다. 고민 끝에 조지는 엘빈에게 남자가 되어 삼촌으로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 그리고 전설적인 여가수 '자자'로 평생을 살아온 엘빈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난관! 아슬아슬, 복잡하고 위태롭기 만한 그들의 쇼는 과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을까...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발명만화 _ 물레발명이야기 (페트병)

건강하게 삽시다 _ 여름철 불청객, 냉방병주의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미국 Yahoo社, Facebook社와 특허분쟁 해결 합의

지난 7월 6일, 미국 Yahoo社は Facebook社와 수개월 동안 계속해 온 특허분쟁을 종료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는 상호 간의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광고 제휴, 특허 크로스라이선스(patent cross-license)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Yahoo社は 지난 3월 12일에 온라인 광고, Social Networking 등에 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Facebook社를 제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Facebook社は 지난 4월 3일에 마찬가지로 Yahoo

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Facebook社は 또한 IBM社와 Microsoft社로부터 특허들을 매입하는 등 Yahoo社와의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양사 간의 특허분쟁 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online.wsj.com*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 Kodak社의 특허 매각절차 허용 명령

지난 7월 2일,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서 열린 소송 심리에서 Allan Gropper 판사는 Kodak社로 하여금 1,100개 이상의 특허들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Kodak社は 지난 1월 19일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약 700개의 특허들로 구성된 디지털 촬영 포트폴리오와 약 400개의 특허

를 포함한 디지털 영상처리 포트폴리오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편, Kodak社は 지난 6월 18일에 Apple社와 Flash Point Technology社가 자사의 특허권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Kodak社は Apple社가 1990년대 초반 양사의 공동 연구로부터 유래된 10건의 특허에 대하여 부당하게 소유권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Kodak社は 또한 1996년에 Apple社에서 분리된 Flash Point Technology社도 이 특허들을 Apple社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해 소유권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리 결과에 대해 Kodak社の Timothy Lynch 최고 지식재산책임자는 특허매각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시의적절한 판결을 내려준데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Timothy Lynch는 해당 특허들에 대한 Apple社の 소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고, Apple社와의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자사의 특허들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www.bloomberg.com>



날짜	분쟁 경과
2012. 2. 1	• Facebook社, 美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공개(IPO) 신청
2012. 2. 28	• Yahoo社, Facebook社에게 로열티 요구 - "온라인 광고, Messaging, Social Networking 등에 관한 Yahoo社의 특허들을 Facebook社가 침해하고 있다"
2012. 3. 12	• Yahoo社, Facebook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 "온라인 광고, Social Networking 등 10건의 특허를 Facebook社가 침해" • Facebook社, Yahoo社와의 특허소송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입장 표명 - "사업 협력관계에 있던 기업이 소송을 제기함에 대해 실망"
2012. 3. 22	• Facebook社, IBM社로부터 약 750개의 특허 매입
2012. 4. 3	• Facebook社, Yahoo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2012. 4. 23	• Facebook社, Microsoft社로부터 약 650개의 특허 매입 • Yahoo社, Facebook社의 대응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입장 표명 - "Facebook社의 특허인수는 특허침해 사실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고, 오히려 Yahoo社의 제소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다"고 평가
2012. 4. 27	• Yahoo社, Facebook社를 상대로 추가 특허침해소송 제기 - "Facebook社가 네트워킹 및 검색광고에 관한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 • Facebook社, Yahoo社의 추가 소송을 평가절하하고 적극적 대응 방침 표명 - Yahoo社의 추가 소송 제기는 "변덕스러운 행동(erratic actions)이다"
2012. 5. 17	Facebook社, 기업공개(IPO)

일본 경제산업성, 지식재산권 일괄심사제도 도입 검토

지난 7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복수의 기술 통합이 요구되는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일괄 심사하는 제도인 「전략적 정리 심사(戰略的まとめ審査)」의 모범 사례(model case) 선정을 2012년 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일괄심사제도를 통해 일본 기업 등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최적 타 이미에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괄심사 시기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방식의 도입 및 일괄심사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특허청(JPO)과 공동으로 신제품 출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정리 심사」 적용 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내에 심사 적용대상 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정통한 심사관들로 이루어진 심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제품이나 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모터, 전지, 디자인, 상표 등 구성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창출 관련 절차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JPO는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모범사례 선정을 통해 일괄심사제도인 「전략적 정리 심사」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략적 정리 심사」가 제도로서 확립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우위를 가진 중소기업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의료기기,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등 일본 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용이 기대된다.

출처 j-net21.smrj.go.jp

일본 특허정보기구, 기계번역을 통한 세계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지난 7월 3일, 일본특허정보기구(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JAPIO)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계번역 시스템을 통해 「세계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계번역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5국 특허 문헌

과 특허협력조약(PCT)의 특허문헌들을 일본어 및 영어로 검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검색자료로서 중국의 실용신안 등 특허 5국을 포괄하고 있는 DocDB를 사용한다.

* JAPIO는 1985년 일본에서 특허정보사업의 일원화를 위하여 설립된 종합 특허정보 서비스기관임

* DocDB(Document Database)는 유럽특허청(EPO)이 약 70개 국가들의 특허 서지정보를 수록·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EPO는 최근에 이를 MCD(Master Classification Database)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JAPIO가 연구개발한 이 기계번역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번역 시스템은 약 190만개의 기술용어에서 엄선된 분야별 기계번역사전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일본어 기계번역문을 제공하며, 기계번역으로 번역된 일본어 이외에도 미국 및 유럽 특허들에 대한 일본어 초록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둘째,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국가의 특허들을 일본어 및 영어로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 일본어와 영어를 동시에 입력하여 검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은 검색창에서 검색 결과를 확인하면서 검색방법을 변경하거나 최초 검색 후에 키워드 선정 등을 통하여 재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계는 지금

정확한 검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출처 SankeiBiz



중국 후진타오 주석 등, 혁신 환경 개선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강조

지난 7월 6일, 중국의 후진타오(胡锦涛) 주석 및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개최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컨퍼런스(全国科技创新大会)」에 참석해 중국의 혁신 환경 개선과 지식재산권의 창출, 운용, 보호 등을 강조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컨퍼런스」는 개혁 및 개방의 심화,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 등에 대처하고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을 위하여 과학기술 제도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다.

* 샤오강 사회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상으로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

적으로 안락한 사회, 중산층 사회를 의미하며, 중국은 이를 2020년까지 이루려는 목표를 두고 있음

이 컨퍼런스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이 과학기술입국 전략 및 인재강국 전략을 실시하고 혁신, 도약, 발전, 미래 선도의 지도방침을 이어가며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와 함께, 경제성장 모델 전환과 경제 구조조정에서 과학기술 지원을 충분히 실행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제약하는 문제점 해결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국가 혁신 체제를 건설하여 세계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혁신 환경을 더욱 고도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및 응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선하여 과학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운용,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가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과학기술 제도 개혁은 기업이 기술혁신 주체가 되도록 추진하고 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자바오 총리는 벤처기업 등과 같은 중소기업이 가장 혁신이 활발한 곳으로써 이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업의 국제

과학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출처 <http://www.sipo.gov.cn>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보호 협회, 「제6회 러시아 지식재산권 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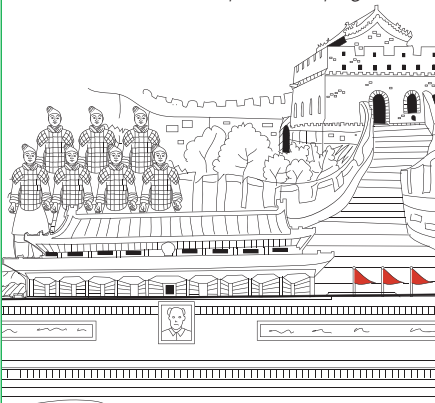
지난 7월 5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보호협회는 「제6회 러시아 지식재산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2007년 이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에서 5차례 개최되었으며, 여태까지 약 800명의 중국 및 해외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주중 러시아 상무대표처 공무원, 베이징시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련 변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 보고회에서 러시아의 특허 변호사 Yury Kuznetsov와 상표권 변호사 Alexander Nesterov 등은 러시아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소개했다. 이들 전문가들의 주요 발표주제는 '러시아에서의 상표 출원 : 러시아 법률의 특징 및 새로운 발전',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세 영향과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처리', '러시아 특허법의 개정 필요성' 등이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의 전략

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무역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보고회는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사업상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www.ipr.gov.cn>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공동체 상표의 '진정사용'에 관한 법무감 의견 공개

지난 7월 5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Leno社와 Hagelkruis社 간에 상표의 진정사용(genuine use)에 관한 사건(C149/11)에 대한 ECJ 법무(Advocate General)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ECJ의

Sharpston 법무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유럽공동체 상표(CTM)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genuine use)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Hagelkruis社는 2009년 7월 27일 니스(NICE) 상표 분류 35류, 41류, 45류에 대해 「ONEL」이라는 상표를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에 출원했다. 이에 대해 Leno社는 니스 상표 분류 35류, 41류, 42류에 대해 자사가 2003년에 등록한 CTM인 「ONEL」에 기초하여 이익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Hagelkruis社는 Leno社에게 CTM의 진정사용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다. BOIP는 Leno社의 이익을 기각하였고 이에 Leno社는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의 쟁점 중 하나는 Leno社가 이익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Leno社가 자사의 CTM 상표 「ONEL」를 EU의 1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정사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EU 상표규정(Regulation No.207/2009) 제 15조는 CTM의 소유주는 상표등록 후 5년 이내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동체 내에서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는 비사용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진정사용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EU 내 단일의 회원국에서의 '진정사용'은 위 규정상의 '진

정사용'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ECJ 법무감은 이번 의견서에서 모든 관련 요소들이 고려되었던 경우에 단일 회원국 내에서의 CTM 사용이 공동체 내에서의 진정사용이 될 수 있는 반면, 단순히 단일 회원국 내에서의 CTM 사용 자체만으로는 해당 상표의 진정사용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공동체 내에서의 진정사용은 제품 관련 시장에서 상표 소유주의 시장점유율 등의 특징들을 고려하여 CTM 사용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 또는 생성하기에 충분한 진정사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견해는 CTM의 '진정사용'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공동체 내에서 진정사용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국 법원은 27개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모든 형태의 상표사용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이때 CTM의 사용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시장 점유율 유지 및 성립하기에 충분한 사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http://www.lexogy.com>



세계는 지금

영국지식재산청, '2011/2012 지식재산 범죄 보고서' 발표

지난 7월 16일, 영국지식재산청(UKIPO)은 「2011/2012 지식재산 범죄 보고서(IP Crime Report 2011/201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계와 정부기관이 공조하여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을 단속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해 UKIPO가 2004년에 설립한 「영국 지식재산 범죄 그룹(UK IP Crime Group)」이 작성하였으며, 2011년 4월 1일~2012년 3월 31일 기간 동안의 지식재산 집행 현황을 토대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조 제품이 단속된 품목은 의류, 담배, DVD, 술, 신발류 등으로 나타났다. 영국 왕실 수입 및 관세기구(HM Revenue and Customs)와 영국 국경단속기구(UK Border Force)는 공조 활동을 펼쳐 영국으로 들어오는 70억 파운드 상당의 위조제품을 압류했으며, 이 중에는 150만 파운드가 넘는 위조 브랜드가 부착된 골프 용품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규제국(MHRA)은 온라인에서 위조의약품을 거래한 자를 적발하여 법원으로부터 1천4백만 파운드의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 이러한 금액은 지금까지의 위조약품에 압류 명령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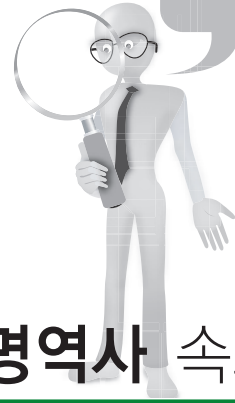
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지식재산 범죄에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출판업자연합(The Publishers Association)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해 20만 건 이상의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영국 음반산업협회(BPI)는 4백만 건 이상의 온라인 불법 디지털 음악 파일을 확인하고 제거했다. UKIPO의 Baroness Wilcox 청장은 이 보고서가 정부와 산업계가 공조하여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한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Baroness Wilcox 청장은 또한 UKIPO가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모범사례(Best Practice)」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지식재산 범죄 그룹이 「사업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

해 방지(Preventing Infringement of IP Rights in the Workplace)」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2012 지식재산 범죄 보고서(IP Crime Report 2011/2012) <http://www.ipo.gov.uk/ipcreport11.pdf>

출처 <http://www.ipo.gov.uk>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라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식품

막대 핫도그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착안한 간식

발명역사 속으로

인스턴트식품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라면! 식품업계의 혁명으로까지 극찬 받았던 라면은 일본에서 시작됐다. 라면은 1958년 일본 닛신(日清) 식품의 회장 모모후쿠(安藤百福)에 의해 개발되어 시판된 식품이다.

1950년대의 일본은 제2차 대전 패배의 후유증으로 인해 건국 이후 최대의 고난기를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에서 밀가루를 지원받아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안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쌀밥을 주식으로 하던 식습관 탓에 빵만으로는 공복감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밀가루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술집을 간 안도는 덴뿌라를 기름에 튀기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게 된다. 바로 집으로 돌아온 안도는 밀가루를 국수로 만들어 튀겨 보았고, 이후 몇 차례 실험 끝에 결국 라면 개발에 성공하였다. 안도가 만들어 낸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아지츠케면(味附麵)은 국숫발에 양념을 묻힌 것으로 끓는 물에 2분만 넣고 끓이면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63년 삼양라면이 일본의 라면 제조기술을 도입해 삼양라면(치킨탕면)을 선보이면서 라면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일반인들에게 라면은 생소할 뿐이어서 초기 반응이 시큰둥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혼분식 소비 권장 정책에 힘입어 라면이 대중화됐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 일상에 빠질 수 없는 식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손쉽게 구해먹을 수 있는 핫도그! 이는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은 세계인의 식품이다.

특히 조그만 막대 핫도그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는 누가 어떻게 발명했을까?

일본의 중소식품업체 기봉식품은 직무발명제도를 채택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에 사기를 북돋우고 있었다. 직무발명제도란 사원이 일과 관련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 특허권은 회사가 갖지만, 로열티는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야마모토 유키오라는 한 사원이 꼬치안주를 만들어 보상금과 승진의 행운을 잡은 후부터였다.

1977년 기봉식품의 생산부에 근무하고 있던 다나카 역시 발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위해 버스에 올라탄 다나카의 눈에 한 모습이 포착됐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스의 손잡이를 단단하게 움켜쥔 소녀의 주먹이었다. 그 순간 작고 귀엽게 튀긴 과자를 떠올린 그는 긴 막대에 소시지를 끼운 핫도그를 발명했다. 이로 인해 다나카는 보상금과 함께 공장장으로 승진했고, 기봉식품은 세계적인 식품회사가 되었다.

KIPO NEWS

특허청, 짝퉁캐릭터 근절 앞장선다

특허청은 지난 7월 18일, 서울캐릭터 라이선싱페어 2012가 개최되고 있는 코엑스전시장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캐릭터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과 공동 노력을 해나기로 하였다.

“뽀로로”나 “뿌까” 등 국내 유명캐릭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도 '05년 2조 700억 원에서 '11년 7조 2,000억 원으로 지난 6년 동안 3.5배나 급성장하였으며, 캐릭터관련 해외수출액도 '10년 3,200억 원에서 '11년 4,250억 원으로 30%나 크게 증가하여 문화상품의 한류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캐릭터 산업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애니메이션 등의 등장인물인 “캐릭터”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마시뽀로인형(마시마로와 뽀로로의 특징을 결합한 인형)”과 같은 짝퉁캐릭터 상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 캐릭터산업의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캐릭터 관련 정보교환과 디자인제

도 개선을 통하여 짝퉁캐릭터 근절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캐릭터상품 자료를 수집하여 특허청에 제공하고, 특허청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관련 상품DB 등을 디자인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모방캐릭터 디자인등록 방지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캐릭터 관련 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세미나·상담을 지원하고, 진흥원은 캐릭터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디자인제도 개선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허청은 인형과 같은 구체적인 상품디자인이 아닌 “캐릭터”디자인 자체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금년에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짝퉁 디자인들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창작성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버려지는 도시 빗물, 특허로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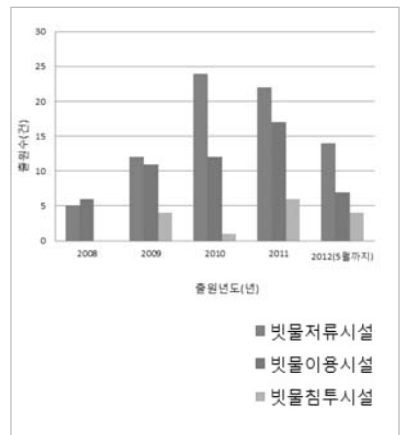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해마다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침수 사례와 같이, 도시에서의

집중호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재해가 되기도 한다.

침수는 빗물량이 도시의 배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여러 형태의 배수 및 저류시설을 확충하고, 녹지면적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침수 방지 대책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침수 방지에서 더 나아가 빗물을 수자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관리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빗물이용시설을 포함한 전체 빗물관리시설 관련 출원이, 2008년 11건에서, 2009년 27건, 2010년 37건, 2011년 45건이고, 2012년에는 5월까지 25건으로, 출원이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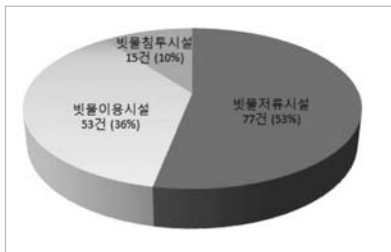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경향은 2010년과 2011년 연이은 서울시 침수피해와 빗물이용을 장려하는 시책으로 인해, 침수 방지 및

빗물이용을 위한 빗물관리시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빗물관리 관련 특허 기술들을 통해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함으로써 용수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5월까지) 빗물관리시설과 관련된 총 145건의 출원 중, 빗물저류시설과 관련된 출원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무독성, 친환경 재질 또는 광촉매 등을 적용하여 정화 기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는 기술과, 조립과 설치가 간편한 저류조 관련 기술 등이 출원되고 있다.

빗물관리시설 중 빗물이용시설 관련 출원은 총 53건으로, 이중 건축물 빗물 집수 관련 출원이 28건, 빗물을 여과, 살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이 25건으로 나타났다. 빗물침투 시설 관련 출원은 15건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강우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어되는 빗물관리시설도 출원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 집중호우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을 제2의 전공으로, 교수님은 공부 중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인력인 이공계 등의 교수에 대한 지식재산교육(T3 : Teaching The Teachers 이하 T3)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T3 프로그램은 지식기반경제 사회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공계 등의 교수에게 지식재산을 교육하여 연구결과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학생에게 전공과목에 지식재산을 접목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교수 1,006명(111개 대학)이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수료('08년~'12년 6월)하였으며, 이 중 40%가 443개(51개 대학, 일부 교수는 다수 강좌운영)의 지식재산 과목을 개설해 전공과 지식재산을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20,312명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물 211건을 특허출원하였으며, 9건을 상표와 디자인으로 출원하였다.

특히,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이전료를 받은 경우도 19건 3억 2천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홍종현 교수는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도로포장 공법”에 관한 연구를 특허로 등록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6천만 원의 기술이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교수는 “T3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연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화하고 기술이전까지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T3 프로그램을 이수한 단국대 화학공학과 이철태 교수 등 52명은 지식재산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가칭)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9.12(수) 창립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연구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T3 프로그램은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인력인 교수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받도록 하고, 대학에서 지식재산교육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향후 의·약대, 경상대, 디자인대 등 비이공계 대학으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대학 내 특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3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전공과 수준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와

KIPO NEWS

교육에 바쁜 교수를 위해 방학을 이용한 교육, 시험기간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 많은 교수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산업공학회” 등 주요 이공계학회 10곳에 대해 지식재산 세션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공공디자인 물품 디자인등록 사상 최대!

최근 수년간 공공디자인 확산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1,615건이었던 공공디자인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는 2011년에는 약 20% 증가한 1,92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 된 물품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물이 35%(677건)로 가장 많고, 벤치나 퍼걸러(pergola)와 같은 휴게시설물이 28%(540건)로 그 뒤를 이어 조명과 휴게시설물이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디자인등록 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공공디자인 사업의 영향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두 해동안 디자인등록출원 건수가 매년 3,000건을 넘어 총 6,500여 건에 달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한편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최근 3년간 등록률은 평균 약 62%로 일반적인 디자인출원의 평균 등록률이 80% 수준인데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판촉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탈로그, 전시회 등을 통해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디자인심사와 주정규 과장은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시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되었더라도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디자인보호법 제8조) 조항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고 증명서류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마철 ‘발명특허 우산’ 으로 대비하세요

“향기 우산, 발광(發光) 우산, 경광등 우산, 선풍기 우산, 커플 우산”

장마철의 필수품 우산이 발명 아이디어와 만나면서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다. 비를 막아주는 단순기능에서 벗어나 편의성과 기능성을 가미한 기능성 우산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

특허출원도 매년 100건 안팎으로 꾸준한 ‘스테디셀러’ 발명소재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산에 관한 특허출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50건이며, 이중 기능성 아이디어 우산에 관한 출원은 총 267건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정수준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규모가 크고, 발명아이디어가 있는 개인이 신소재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가한 우산의 특허출원에 관심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방송된 KBS 2TV 남자의 자격 ‘남자 그리고 발명왕’ 편에서도 상당수 참가자가 우산을 소재로 한 발명품을 대거 출품한 바 있다.

기능성 우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몇 가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소재를 포함하여 우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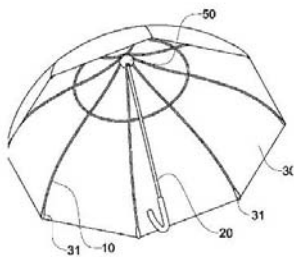
이렇게 소재 및 구조설계를 개선한 우산이 기능성 우산의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강한 탄성을 가진 고 탄소강 선재를 우산살로 사용하여 종래의 우산살을 지지하는 우산살 지지대 없이 우산의 형태가 유지되는 고 탄소강 선재 우산과 2개의 우산 포를 지퍼나 벨크로 테이프로 연결하여 연인이 같이 쓸 수 있는 커플 우산이 그것이다.

〈커플 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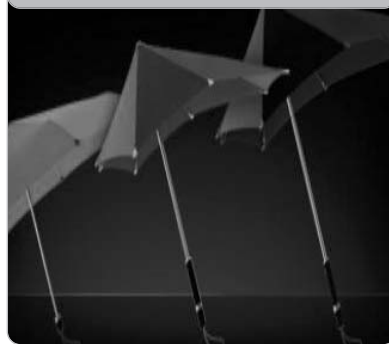
〈고 탄소강 선재 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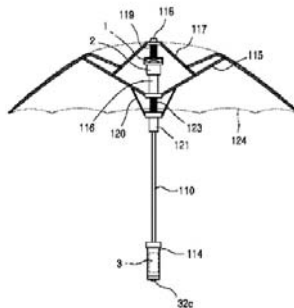
“우산은 대칭구조여야 한다”는 오랜

편견을 깨고 사람이 방수 천의 중심에 위치하여 비 또는 강한 바람에 의해 뒤집히지 않는 편심 축 우산, 우산에 묻은 빗물을 쉽게 처리하는 탈수관련 기능개선 우산으로, 초음파 진동자 하우징을 설치하여 우산살에 상하 진동을 줘서 빗물을 제거하는 진동 우산도 있다.

〈편심축 우산〉



〈진동 우산〉



우산에 다른 기능을 추가한 복합기능 채용 우산은 어린이 보호기능을 갖는 LED-광섬유 연동형 발광 우산, Wi-Fi 모듈과 안테나를 설치하여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우산, 우산포의 일측 영역에 가방부를 구비한 가방우산, 라디오 수신기능 우산, 향수 우산 등이 있다.

기능성 아이디어 우산의 출원은 내국인의 비율이 절대다수(전체의 94.2%)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출원비율이 전체의 94.6%로 높다.

영세상인들을 상표권 남용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특허청은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로 인해 상표권 침해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정당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등록 후에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상표의 공정한 사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표 출원인의 상표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하고, 상표 출원인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절차의 계속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상표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한다.

그간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이들의 음식점명

KIPO NEWS



칭과 유사한 상표를 사후에 상표등록을 받아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어 합의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영세상인들을 겨냥한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로 인한 분쟁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의 영세상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표등록은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을 하기 때문인데, 상표브로커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영세상인들의 사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영세상인들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후에 등록한 후 상표권을 행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상표법은 제51조에서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이라는 용어는 불확정 개념이기에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어, 간판 등에 자신의 상호를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외에 도형 등을 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상표브로커들이

등록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협박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상인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합의금을 낼 수밖에 없어, 그간 영세상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금번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호를 도형 등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등록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구체화하여 영세상인들이 자신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상표법 제51조는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 후에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이 경우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와 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상호가 먼저 사용되었다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 후에 최초로 상

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과 상호의 조화로운 균형을 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그동안 특허청에서 파악한 고질적인 민원, 영세상인, 주요 기업, 학계, 업계 등과의 간담회 등에서 파악된 개정수요를 상표법에 반영한 것으로, 상표의 공정한 사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를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영세상인들이 요식업 등에 사용하는 상호를 상표권자의 악의적인 권리남용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상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상인에 대한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소중한 상표권이 우리 기업들이 쌓아놓은 영업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경쟁행위 때문에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제공 특허청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smp@kipa.org

QUIZ

1. 2012년 런던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누구인가요?
3. 해밀턴 항은 1885년부터 22개월간 영국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섬을 점령했을 때 당시에 붙인 이름입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책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의견

- ▶ **조향래 독자** _ '나가사키 짬뽕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제목의 칼럼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허와 상표등록이라는 심도 있는 내용을 우리 현실 가까이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풀어내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누구나 찬반의 입장에서 판정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네요.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각국의 특허, 상표등록의 장단점, 특징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도표형식의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임경희 독자** _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특허에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리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전공을 했는지, 보람은 무엇인지 등등
- ▶ **한혜령 독자** _ 연예인 이름을 내건 상표출원이 급증한다고 하는데 유명인이거나 연예인이 되면 그만큼 홍보나 광고 효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알찬 정보소개를 부탁드립니다.

7월호 퀴즈 정답

1. 교토의정서
2. 케밥
3. 분데스리가

퀴즈 정답자

조향래 대구시 서구 평리동
임경희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한혜령 김천시 신음동

KIPA NEWS



발명교육계 “한국의 빌게이츠 키워내자”

우리회 4개 교육학회, 창의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MOU 체결

우 리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의발명교육의 진단과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교육전문 4개 학회와 창의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회와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기술교육학회, 한국영재교육학회, 한국상담학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식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정규교과 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명교육 영역의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회와 각 학회는 창의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현장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교육수요 발굴·창출·활용 등 발명 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 발명교육 교재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 발명인재 육성 이슈에 관한 정책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청소년 발명교육이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요소라는 공동인식을 가진 학회들과 서로의 강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발명·지식재산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회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확산 간담회 열어

○ 리회는 지난 7월 18일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추진 방안과 성과를 공유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사업화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주)에이치케이터빈 김정훈 대표는 "특허기술에 대한 시작품 제작 및 금융연계지원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문턱을 낮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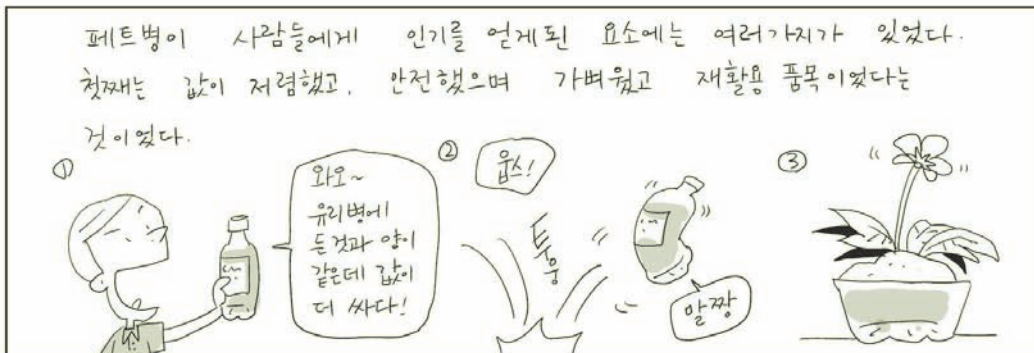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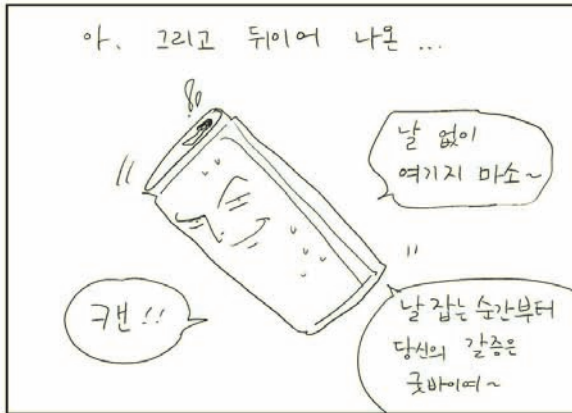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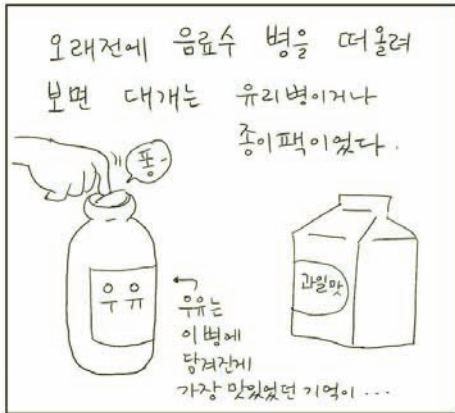
(주)부강테크 유대환 대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전략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해외선도업체의 IP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회는 지난해부터 해당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개선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물레발명이야기 _ 페트병

글·그림 김민재



어디 그 썩인가? 페트병은 놀이감으로도 훌륭하다.



이렇듯 다양도로 쓰이는 페트병은 미국의 엔지니어인 '너세니얼 와이어스 (1911-1990)'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 지는 동안 주변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다.



결과는!!



하지만 와이어스는 실패후 대략 만번 이상의 실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후 바로 생산되었으며 1999년경엔 일년동안 1000억병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여름철 불청객, 냉방병 주의

한 낮 기온이 30℃를 넘는 찜통더위로 인해 냉방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에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릴 정도라고 한다.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은 전력 문제뿐만이 아니다. 에어컨이 하루 종일 가동되는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냉방병으로 두통, 피로감, 소화불량 등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낮지 않는 여름 감기, 냉방병이 원인

인체는 환경에 맞게 변화한다. 하지만 주변 온도가 급격히 바뀔 경우 신체리듬의 혼란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에는 '냉방병'이 있다. 냉방병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차가운 실내와 그렇지 않은 외부와의 온도 차이에 인체가 적응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기와는 엄연히 다르다.

냉방병의 증상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두통, 콧물, 코막힘 등 몸살 감기

김소형
한의학 박사



와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 또 쉽게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소화불량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불순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더욱 악화되기도 하므로 냉방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의 찬 바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체온저하로 인해 면역력도 떨어진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혈액은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산소, 면역물질 등을 운반하는데, 체온 저하로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각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섭씨 35.5도 정도 되면 배설기능이 저하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며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린다. 반대로 체온이 걱정 이상으로 높아도 체온이 낮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 몸 속의 혈관이나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추울 때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시간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면 피부도 냉방병에 걸린다. 에어컨 바람은 실내온도와 습도를 모두 낮춰 피부의 수분을 빼앗는다. 그로 인해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우며 피부건조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아토피 환자들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장시

간 노출될 경우 피부가 건조해져 아토피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냉방병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있는 만성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평소 체질적으로 몸이 차고 소화가 약한 소음인들이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반바지나 치마를 많이 입게 되는 여성이 남성보다 냉방병에 더 취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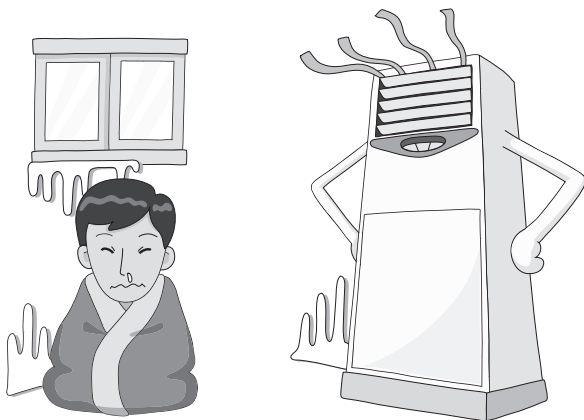
따뜻한 한방차로 냉기 없애야

냉방병은 그 원인이 확실한 만큼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다.

먼저, 과도한 에어컨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날씨가 덥다고 무작정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으로 실내온도를 24~26℃로 맞추는 것이 적당하고, 실내·외 온도차는 5℃ 내외로 유지하도록 한다.

또 에어컨의 찬바람은 직접 쐬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더운 곳에 있다가 바로 찬바람을 쐬면 땀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여서 냉기가 바로 침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냉방을 가동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고, 에어컨 관리도 잊지 않도록 한다. 에어컨의 필터를 자주 청소하지 않거나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환기를 잘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에어컨에서 증식한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곰팡이와 세균들이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트러



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에어컨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만약, 중앙 냉방으로 실내 온도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릎 담요나 긴 옷 등으로 한기를 막고, 따뜻한 차를 마셔 몸에 온기를 더해주는 것이 좋다. 이때 감기에 걸린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거나 한다면 향유차가 도움이 된다. 더위와 습기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는 향유는 장시간 냉방에 노출되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된다. 냉방병에는 갈근차도 좋은데, 한방에서 갈근이라 부르는 칙은 냉방병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등덜미가 뻣근하고 아픈 데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갈근은 경련을 진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도 그만이다.

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 하여 찬 음료나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삼가야 한다. 여름이 되면 인체의 양기가 피부와 상부로 몰려 상대적으로 몸 속은 냉해지는데 너무 찬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속은 더욱 냉해져 냉방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름에도 몸이 냉한 체질은 따뜻한 차나 음식으로 인체 내 냉기가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부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어 얼굴 당김이나 건조함이 느껴진다면 미스트와 수분크림 등의 보습제품을 바르거나 가슴기를 사용하여 피부의 건조함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틈틈이 바깥공기를 쐬면서 산책과 가벼운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것도 냉방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간혹 냉방병을 우려하여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선풍기 역시 직접 쐬거나 장시간 사용하면 피부 온도가 내려가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2. 8 |



2012 지식재산캠퍼스 연간 교육일정

▶ 지재권 일반과정

✳ 특허청 80%지원, 노동부 약 15%환급

NO	일자	강좌명
1	02.08 ~ 02.10	지식재산권 기초 1기
2	02.15 ~ 02.17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1기
3	02.22 ~ 02.24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1기
4	03.14 ~ 03.16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5	03.21 ~ 03.23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6	03.28 ~ 03.30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7	04.04 ~ 04.06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8	04.25 ~ 04.27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1기
9	05.09 ~ 05.11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0	05.23 ~ 05.25	중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11	06.05 ~ 06.08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2기
12	06.13 ~ 06.15	지식재산 번역(한-중)
13	06.20 ~ 06.2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OA)
14	08.22 ~ 08.24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5	08.29 ~ 08.3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6	09.05 ~ 09.07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2기
17	09.12 ~ 09.14	지식재산 번역(한-미) 2기
18	09.19 ~ 09.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19	09.26 ~ 09.28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0	10.10 ~ 10.12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21	10.24 ~ 10.26	유럽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22	10.31 ~ 11.0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분쟁소송)
23	11.07 ~ 11.09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기
24	11.14 ~ 11.16	지식재산권 기초 4기

▶ 지재권 특별과정

✳ 특허청 80%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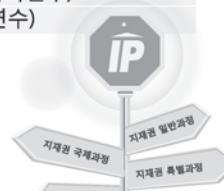
NO	일자	강좌명
1	02.28	한-미,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2	04.17	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
3	04.19	Patent Troll 대응 및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요령
4	05.03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5	05.29	직무발명 제도 및 직무발명 보상평가
6	06.26	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 실무
7	06.28	특허 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8	09.25	연구노트와 발명신고서 작성법
9	10.0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 관리전략
10	10.05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1	10.17	심사관과 함께하는 명세서 클리닉
12	11.22	올해의 판례동향-특허, 디자인
13	11.23	올해의 판례동향-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 지재권 국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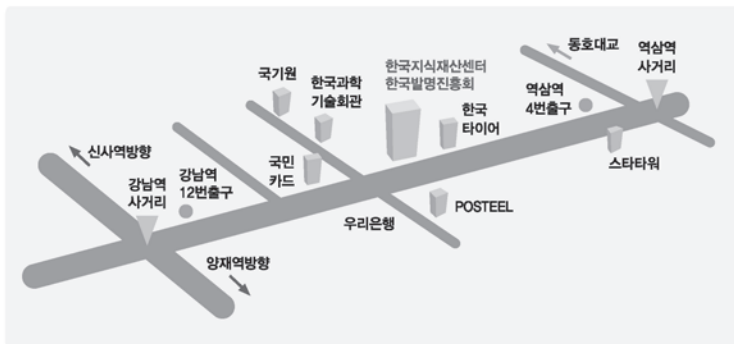
NO	일자	강좌명
1	03.08 ~ 05.22	PADIAS* (해외강사 국내초청 강의)
2	7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EUROPE (해외연수)
3	8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USA (해외연수)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교육비의 약 15% 환급
- 특허청(중소기업 대상):교육비의 80% 환급
- 특허청 예산 소진시 교육비 지원 조기마감 가능
- 환급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 특허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실무 과정



오시는 길



교육장 안내



▲ 제1교육장

▲ 제2교육장

▲ 교육생 휴게실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smp@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smp@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TEL (02)3459-2727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편집 : 기획팀 박선민 주임 (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아이디어가 시골티즈가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교육**」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LS산전이 톰슨 로이터 선정
세계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TOP



THOMSON REUTERS
TOP100
GLOBAL INNOVATORS

LS산전의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이자 통신사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성공률, 특허 보유 수, 특허 피인용도, 특허 포트폴리오의 해외 접근성 등의 질적, 양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세계 최고 100대 혁신기업은 우리나라에는 오직 **삼성전자, LG전자, 제일모직**, 그리고 **LS산전**만이 선정되었습니다.